

발간 등록 번호

BSPM60910-12014-7

#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투자 가이드라인

2019. 2

##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투자 가이드라인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투자 가이드라인



한국해양수산개발부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IMARPE INSTITUTO DEL MAR DEL PERÚ KOPE-LAR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간등록번호

BSPM60910-12014-7

#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투자 가이드라인

2019. 2





저 자: 김경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자 문: Javier Garcia Locatelli(페루 수산·양식법 관련 변호사)

Raul Castillo(페루해양연구소(IMARPE),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장창익(부경대학교)

허성표(한국해양과학기술원)

페루생산부 양식부서



# 목 차

제1장 들어가는 글 .....	1
제2장 페루 양식현황 .....	3
2.1 페루 양식개관 .....	3
2.2 페루 양식실태 .....	14
2.3 주요 양식어종 및 양식현황 .....	16
2.3.1 틸라피아(Nile tilapia), <i>Oreochromis niloticus</i> .....	16
2.3.2. 파이체(Amazon fish), <i>Arapaima gigas</i> .....	17
2.3.3 가리비(Peruvian scallop), <i>Argopecten purpuratus</i> .....	18
2.3.4 무지개송어(Rainbow trout), <i>Oncorhynchus mykiss</i> .....	19
2.3.5 흰다리 새우(Whiteleg shrimp), <i>Litopenaeus vanamei</i> .....	20
2.3.6 페루넙치(Fine flounder), <i>Paralichthys adspersus</i> .....	20
2.4 페루 양식정책 및 주요 도전과제 .....	21
제3장 양식기업 관련 법 및 설립 절차 .....	23
3.1 양식기업 관련 법 및 규정 .....	23
3.1.1 페루 양식회사 설립과 양식사업 개발을 위한 법 체계 .....	23
3.2 양식기업 설립 절차 .....	31
3.2.1 서문 .....	31
3.2.2. 페루에서 양식업체 설립하기 .....	31
제4장 고찰(경험과 교훈) .....	55
4.1 양식회사 설립 관련 .....	55
4.1.1 부지 선정 및 확보 .....	55
4.1.2 생산시설 허가 .....	56

4.1.3 위생검사	57
4.1.4 판매 허가	57
4.1.5 기존 양식기업 설립 사례	58
4.2 양식회사 운영 관련	59
<b>제5장 결론</b>	<b>63</b>
<b>제6장 용어 해설</b>	<b>65</b>
6.1 약어 해설	65
6.2 용어 사전	65
<b>제7장 참고문헌</b>	<b>71</b>
<b>부속서</b>	
부속서 1 - 환경 영향평가 승인 절차 - 생산부 TUPA	73
부속서 2 - 양식권과 관련한 절차 - 생산부 TUPA	75
부속서 3 - 양식업권 관련 절차 - DICAPI TUPAM	78
부속서 4 - 양식권 - VUA 양식	81
부속서 5 - 양식업권과 관련한 절차 - ANA TUPA	85
부속서 6 - 위생 투자와 관련한 절차 - SANIPES TUPA	87

# 표 목 차

<표 2.1> 페루지역별 양식생산량 .....	3
<표 2.2> 양식어종별 생산량 .....	7
<표 2.3> 종별 국내 판매량 .....	8
<표 2.4> 양식종별 수출국가 및 수출량 .....	9
<표 2.5> 종별 수출국가 및 수출가치 .....	11
<표 2.6> 해면양식 사용가능지역과 실제 사용면적 .....	15
<표 3.1> 양식업 허가 및 권리 신청(행정절차 통합규정 절차 제59호) .....	35
<표 3.2> 양식업 허가 및 권리 신청 절차(EIA-sd) .....	36
<표 3.3> 양식지 허가(절차 제43호) .....	37
<표 3.4> AMYGE에 대한 승인 갱신 및 수정(절차 제44호) .....	38
<표 3.5> AMYGE 양식업권(절차 제36호) .....	39
<표 3.6> 양식업권 승인 갱신 및 수정(절차 제37호) .....	40
<표 3.7> 양식업권 허가 및 권리의 양도(절차 제49호) .....	42
<표 3.8> 해양구역 허가절차 .....	45
<표 3.9> 양식업 목적 수역사용 허가(절차 제16호) .....	49
<표 3.10> 양식업 목적 수자원개발 수력기반공사 및 수생연구 승인 .....	50
<표 3.11> 기업체 유형별 각종 시설에 대한 사전위생 인증 요구사항 .....	52
<표 Annex 1> 환경영향평가 절차 .....	73
<표 Annex 2> AMYGE 권리 승인 및 갱신 .....	75
<표 Annex 3> 수역 사용 허가 절차 .....	78
<표 Annex 4> 양식번호 79 부속서 .....	83
<표 Annex 5> 수산양식 목적 수자원개발을 위한 수자원 기반사업 승인 .....	85
<표 Annex 6> 위생 훈련 관련 절차 .....	87

## 그림목차

<그림 2.1> 지역별 내수면 양식 현황 .....	6
<그림 2.2> 지역별 해면 양식 현황 .....	6
<그림 2.3> 페루 국가양식발전계획(2010~2021), 지역별 주요 양식종 .....	14
<그림 2.4> 틸라피아 양식생산량 추이 .....	17
<그림 2.5> 바이체 양식생산량 추이 .....	18
<그림 2.6> 가리비 양식생산량 추이 .....	19
<그림 2.7> 송어 양식생산량 추이 .....	19
<그림 2.8> 새우 양식생산량 추이 .....	20
<그림 2.9> 넙치 양식생산량 추이 .....	21
<그림 3.1> 양식업 프로젝트 허가 절차 .....	38
<그림 3.2> 양식업권 직접 취득 절차 .....	42
<그림 3.3> 양식업 목적 수자원 이용면허 승인 절차 .....	51

## 제1장 들어가는 글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투자가이드라인’은 2012년 11월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sup>1)</sup>가 개설된 이래 수산양식기술 교육훈련 등 양식분야에서 한국과 페루간의 협력활동을 지속해왔으나 실질적으로 한국과 페루 민간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프로젝트다.

제5차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2018년 6월, 페루 리마)에서 동 프로젝트가 한·페루 간 협력과제로 의결되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페루생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페루해양연구소(IMARPE), 코트라, 페루 수산·양식법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향후조치들을 논의하였다.

페루 양식현황 관련 보고서, 논문, 학회발표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고, 페루 수산·양식 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페루 양식기업 설립과 관련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작성하였다. 또한 페루 민간 양식기업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식사업의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페루 양식현황을, 3장에서는 페루 양식기업과 관련된 법규와 규정, 그리고 기업설립절차를 소개하고, 4장에서는 페루 민간양식기업 설립·운영에 대한 성공·실패에 따른 교훈 등을 기술하였다.

동 투자가이드라인의 목적이 페루 양식산업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 및 페루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 바, 조금이나마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한국해양수산부와 페루생산부의 해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양해각서(2008년 체결, 2010 및 2017년 개정)와 동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이행약정서(2012년 체결)를 토대로 2012년 11월에 세워진 센터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페루해양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협력사안에 대해 의결한 것을 토대로 한·페루간/한·중남미간 해양 분야(수산 분야포함)에서의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제2장 페루 양식현황

### 2.1 페루 양식개관

페루 양식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중남미 생산량의 4%, 칠레 양식 생산량의 20% 수준에 불과하다(2006년 28,387톤에서 2017년 100,132톤으로 증가, 최근 2-3년간 생산량 정체). <표 2.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내수면 양식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해면양식은 2015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sup>2)</sup>.

〈표 2.1〉 페루지역별 양식생산량

(단위: 톤)

지역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Amazonas (아마존)	내수면	43.44	74.20	84.37	293.60	272.81
	해면	2.33				
	소계	45.77	74.20	84.37	293.60	272.81
Ancash (앙까시)	내수면	659.00	82.10	78.56	85.70	78.82
	해면	11,004.48	11,905.45	10,838.34	12,935.51	10,268.51
	소계	11,663.48	11,987.55	10,916.90	13,021.21	10,347.36
Apurímac (아푸리막)	내수면	50.14	59.55	75.04	97.68	125.03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50.14	59.55	75.04	97.68	125.03
Arequipa (아레끼빠)	내수면	42.82	90.67	28.79	18.81	11.95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42.82	90.67	28.79	18.81	11.95
Ayacucho (아와추초)	내수면	264.86	310.90	495.95	558.49	801.54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264.86	310.90	495.95	558.49	801.54
Cajamarca (까하마르까)	내수면	348.59	194.80	100.95	160.96	185.04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348.59	194.80	100.95	160.96	185.04

2) 주로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리비 생산량의 대폭 감소에 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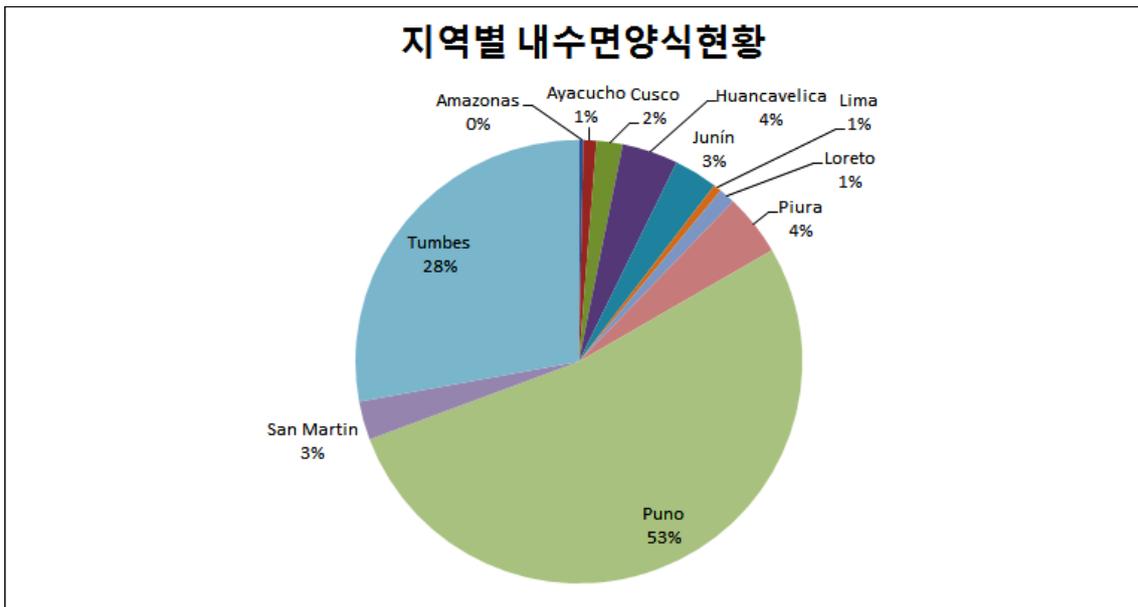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투자 가이드라인

지역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Cusco (쿠스코)	내수면	641.00	170.15	992.00	1,497.50	1,610.00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641.00	170.15	992.00	1,497.50	1,610.00
Huancavelica (우앙까베리카)	내수면	1,222.00	1,443.95	3,386.83	3,704.05	3,454.09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1,222.00	1,443.95	3,386.83	3,704.05	3,454.09
Huánuco (우와누꼬)	내수면	197.70	269.10	258.99	247.00	384.70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197.70	269.10	258.99	247.00	384.70
Ica (이카)	내수면	0.00	0.00	0.00	1.01	1.17
	해면	491.60	389.78	303.06	836.79	806.64
	소계	491.60	389.78	303.06	837.80	807.81
Junín (후닌)	내수면	2,126.97	1,614.74	1,177.55	2,262.96	2,687.62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2,126.97	1,614.74	1,177.55	2,262.96	2,687.62
La Libertad (라리베르타드)	내수면	9.56	50.20	125.74	125.43	129.27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9.56	50.20	125.74	125.43	129.27
Lambayeque (람바예께)	내수면	0.00	0.00	0.00	0.00	7.62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0.00	0.00	0.00	0.00	7.62
Lima (리마)	내수면	398.08	461.93	436.87	523.77	500.03
	해면	39.97	0.00	0.00	1.27	0.00
	소계	438.05	461.93	436.87	525.04	500.03
Loreto (로레토)	내수면	359.69	202.70	209.78	1,136.53	1,001.13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359.69	202.70	209.78	1,136.53	1,001.13
Madre de Dios (마드레데디오스)	내수면	336.59	302.53	409.02	280.37	286.74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336.59	302.53	409.02	280.37	286.74
Moquegua (모께구아)	내수면	10.66	8.44	8.44	0.00	0.00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10.66	8.44	8.44	0.00	0.00
Pasco (파스코)	내수면	88.25	89.27	127.76	234.11	332.09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88.25	89.27	127.76	234.11	332.09

지역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Piura (피우라)	내수면	4,745.68	5,957.46	6,348.07	2,687.66	3,813.82
	해면	56,205.72	42,807.38	11,891.59	7,205.76	2,069.44
	소계	60,951.40	48,764.84	18,239.66	9,893.42	5,883.26
Puno (뿌노)	내수면	29,090.66	28,236.12	34,114.00	43,290.02	44,845.36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29,090.66	28,236.12	34,114.00	43,290.02	44,845.36
SanMartin (산마르틴)	내수면	1,576.30	2,471.39	1,315.90	1,924.19	2,388.10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1,576.30	2,471.39	1,315.90	1,924.19	2,388.10
Tacna (따끄나)	내수면	20.75	67.64	30.21	32.79	34.60
	해면	0.00	0.00	0.05	0.00	0.00
	소계	20.75	67.64	30.26	32.79	34.60
Tumbes (툼베스)	내수면	15,572.04	17,835.31	18,008.58	19,081.08	23,741.55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15,572.04	17,835.31	18,008.58	19,081.08	23,741.55
Ucayali (우까야리)	내수면	140.75	106.45	85.54	215.93	295.25
	해면	0.00	0.00	0.00	0.00	0.00
	소계	140.75	106.45	85.54	215.93	295.25
내수면양식		57,945.53	60,099.60	67,898.94	78,459.64	86,988.33
해면양식		67,744.10	55,102.61	23,033.04	20,979.33	13,144.59
총계		125,689.63	115,202.21	90,931.98	99,438.97	100,13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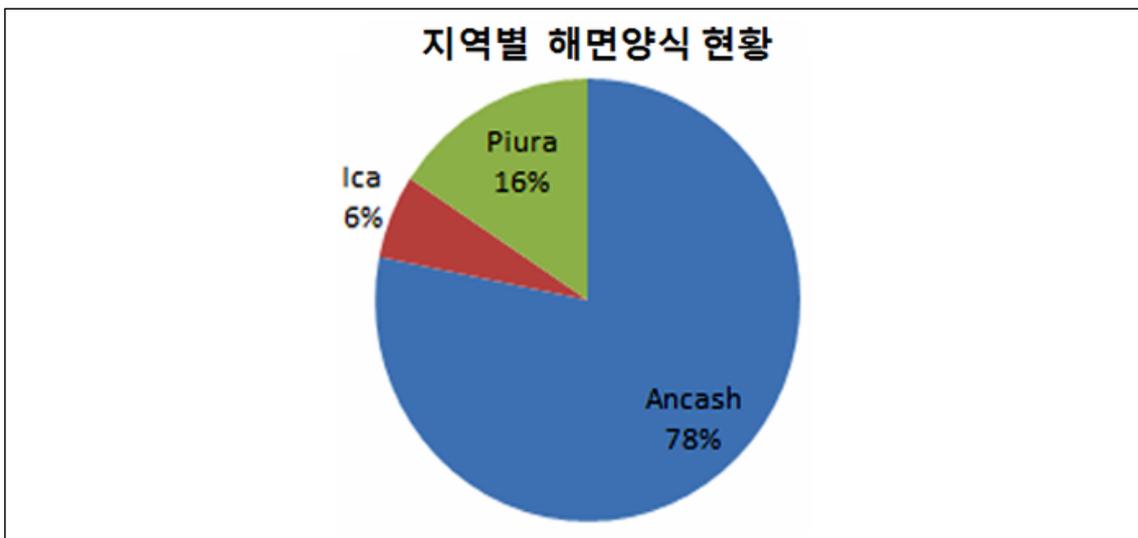
내수면 양식은 송어 양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수면 양식은 가리비 및 새우양식이 전체 양식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양식 생산량은 2004년 2.59만 톤에서 2015년 9.09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의 50.3%는 해수면에서, 49.7%는 내수면에서 생산되고 있다(2015년도 기준). 가리비의 경우는 환경 문제(적조 및 엘니뇨 현상)로 최근 수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송어는 생산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틸라피아(Tilapia)와 아마존 물고기(Paiche) 양식의 경우 양식 비율은 높지 않으나, 최근 들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내수면 양식생산량은 <그림 2.1>과 같이 뿌노가 1위(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툼베스(28%)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송어가 이 지역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1〉 지역별 내수면 양식 현황

지역별 해면 양식현황을 살펴보면, 양까지(73%), 비우라(16%), 이까(6%) 순으로 새우양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까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와 같이 내수면 양식에 비해 해면 양식지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지역별 해면 양식 현황

양식어종별로 살펴보면, 무게 기준으로 2013년에는 해면 양식생산량이 내수면 양식 생산량보다 2배 정도 많았던 반면, 내수면 양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해면 양식생

산량이 감소하면서, 2016년도부터는 내수면 양식생산량이 해면 양식생산량보다 많았다. 이는 송어류 생산량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면양식의 가리비양식 생산량은 엘리뇨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새우 생산량의 증가에 비해 가리비 생산량의 대폭적인 감소가 전체 해면 양식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표 2.2〉 양식어종별 생산량

(단위: ton)

지 역	종 류	2013	2014	2015	2016	2017	
내수면	어 류	Boquichico(보끼치꼬)	56	6	9	31	58
		Carachama(메기)	10	5	4	9	6
		Carpa(잉어)	6	2	4	4	5
		Gamitana(땀바끼)	531	504	299	1,863	1,047
		Paco(빠꼬)	443	453	825	1,390	1,733
		Pacotana(빠꼬따나)	15	9	219	11	35
		Paiche(피라루쿠)	94	55	135	142	218
		Tilapia(틸라피아)	3,840	4,610	3,250	2,950	2,665
		Trucha(송어)	34,992	32,923	40,946	52,245	54,424
		Sabalo(사발로, 송어류)	58	37	33	87	84
	갑각류	Camarón Gigante de Malasia(큰징거미새우)	20	78	21	34	26
	기 타	Otros(기타)	3	1	12	4	6
	소 계		40,068	38,683	45,757	58,770	60,307
해 면	어 류	Lenguado(넙치)	3	3	4	3	7
	패 류	Concha de Abanico(가리비)	67,694	55,096	23,029	20,975	13,137
		Ostras del Pacífico(태평양 굴)	0	0	0	0	0
	갑각류	Langostino(새우)	17,883	21,484	22,183	20,441	26,768
	해조류	Algas(해조류)	44	3	2	1	2
	기 타	Otros(기타)	0	0	1	0	0
	Total		85,624	76,586	45,219	41,420	39,914
총 계		125,692	115,269	90,976	100,190	100,221	

페루 국내의 양식물 판매량도 2013년 38,567톤에서 2017년 58,715톤으로 약 52%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송어류의 판매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표 2.3〉 종별 국내 판매량

(단위: 톤)

지역	종류	2013	2014	2015	2016	2017	
내수면	어류	Boquichico(보끼치꼬)	56	14	9	31	58
		Carachama(메기)	10	5	4	9	6
		Carpa(잉어)	6	2	4	4	5
		Gamitana(땀바끼)	531	442	298	1,863	1,047
		Paco(빠꼬)	443	449	825	1,390	1,733
		Pacotana(빠꼬파나)	15	33	219	11	35
		Paiche(피라루쿠)	87	60	45	58	218
		Tilapia(틸라피아)	2,069	2,867	1,506	2,055	2,100
		Trucha(송어)	34,066	31,315	37,658	48,812	52,039
		Sabalo(사발로, 송어류)	58	12	33	87	84
	갑각류	Camarón Gigante de Malasia(큰장거미새우)	20	78	23	34	26
	기타	Otros(기타)	3	2	3	4	6
	소계		37,364	35,279	40,627	54,358	57,357
해면	패류	Concha de Abanico(가리비)	532	387	2,000	1,142	511
		Ostras del Pacífico(태평양굴)	0	0	0	0	0
	갑각류	Langostino(새우)	668	827	4,495	1,244	840
	기타	Otros(기타)	3	58	10	4	7
	소계		1,203	1,272	6,505	2,390	1,358
총액		38,567	36,551	47,132	56,748	58,715	

페루 양식생산물의 수출금액은 2015년 2.3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새우의 경우 수출량은 25%를 차지하였으나 수출금액에 있어서는 60%를 차지한 반면, 가리비는 전체 수출의 35%(80백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가리비는 프랑스, 벨기에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전체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출량도 감소하고 있다. 새우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42%), 프랑스(24%), 베트남(10%) 순으로 수출되었으며, 2016년을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다. 송어류는 2017년을 기준으로, 미국(37.6%), 캐나다(24%), 일본(13.3%) 순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어 수출 비중은 낮은 편이다. 수출금액 측면에서는 2006년 77.5백만 달러에서 2013년 298백만 달러로 급성장한 뒤 약간의 감소와 정체기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량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3년 35,870톤에서 2017년 33,483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페루 양식생산물의 가장 큰 수출국가는 미국이며, 새우와 가리비는 유럽지역으로의 수출이 우세하다. 한국은 페루로부터 주로 새우를 수입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 해조류 양식생산물은 2013년 칠레로 수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출과 국내 판매량이 거의 없다.

〈표 2.4〉 양식종별 수출국가 및 수출량

(단위: 톤)

양식종	수출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Concha de Abanico (가리비)	호 주	505	277	13	23	79
	벨기에	1,435	1,604	812	738	312
	중 국	24	23			
	한 국	14	18			
	스페인	350	398	325	753	325
	미 국	6,686	2,583	913	434	273
	프랑스	5,793	5,937	3,853	1,837	1,696
	홍 콩	0	11			
	이탈리아	607	704	306	173	145
	일 본	0	0	0	0	0
	뉴질랜드	84	91	20	21	128
	네덜란드	488	477	390	616	328
	영 국	184	257	136	46	69
	싱가포르	18				6
	태 국		25			
	베트남	212				
	기 타	999	1,163	578	490	461
소 계	17,399	13,568	7,346	5,131	3,822	
Langostino (새우)	벨기에	0	0	0	19	0
	한 국	272	420	341		733
	에콰도르	58				
	스페인	2,959	3,040	5,072	5,108	6,283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투자 가이드라인

양식종	수출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Langostino (새우)	미 국	10,974	13,323	12,555	10,125	11,164
	프랑스	754	1,371	2,573	1,567	2,159
	홍 콩	0	0			
	이탈리아	36	52	218	223	25
	일 본	282	136	149	0	1,286
	네덜란드	0	0	116	0	144
	포르투갈	0	0	0	26	64
	태 국	50		56		0
	대 만		0			26
	베트남	0				2,755
	기 타	1,151	685	936	2,718	1,853
	소 계	16,536	19,027	22,016	19,786	26,492
Tilapia (틸라피아)	한 국	0	0	0	0	0
	미 국	228	244	318	222	147
	대 만	0	0	0	0	0
	기 타	57	3	5	35	1
	소 계	285	247	323	257	148
Trucha (송어류)	독 일	183	68	0	11	0
	캐나다	431	176	312	453	720
	중 국	111	74	376	0	0
	한 국	0	0	0	0	0
	미 국	57	156	597	904	1,118
	일 본	23	24	155	0	394
	말레이시아	23	0	0	0	0
	노르웨이	42	64	56	34	11
	폴란드	0		0		0
	스웨덴	66	41	38	0	27
	베트남	0	0	25	0	0
	기 타	580	266	556	1,506	700
	소 계	1,516	869	2,115	2,908	2,970
Paiche (피라루쿠)	한 국	1	0	0	0	0
	미 국	113	6	39	38	50

양식종	수출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Paiche (피라루쿠)	대 만	0	0	0	0	0
	기 타	4	1	0	1	1
	소 계	118	7	39	39	51
Algas (해조류)	칠 레	16	0	0	0	0
	기 타	0	0	0	0	0
	소 계	16	0	0	0	0
총 액		35,870	33,718	31,839	28,121	33,483

〈표 2.5〉 종별 수출국가 및 수출가치

(단위: 달러)

양식종	수출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Tilapia (틸라피아)	한 국	0	0	0	0	0
	에콰도르	38,289	19,201	38,075	0	0
	미 국	1,304,735	1,831,153	2,580,321	1,791,136	1,273,755
	기 타	9,496	12	105	98,012	2,159
	소 계	1,352,520	1,850,366	2,618,501	1,889,148	1,275,914
Trucha (송어류)	독 일	790,691	299,407	0	90,003	0
	캐나다	3,319,840	1,470,065	2,531,639	3,352,548	5,569,537
	중 국	457,589	346,460	1,500,558	0	0
	한 국	60	0	0	0	0
	미 국	377,508	1,488,780	5,223,710	8,259,674	12,320,869
	일 본	71,242	147,597	781,968	0	3,760,505
	노르웨이	273,015	385,440	358,352	270,570	102,350
	스웨덴	470,863	302,967	265,962	0	211,050
	베트남	0	0	111,535	0	0
	기 타	3,096,643	1,569,339	1,817,359	8,445,407	3,712,565
	소 계	8,857,451	6,010,055	12,591,083	20,418,202	25,676,876
Paiche (피라루쿠)	한 국	13,730	0	0	0	0
	미 국	1,672,056	85,838	446,614	431,690	551,466
	홍 콩	228,054	0	0	0	0
	일 본	24,055	2,577	0	0	0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투자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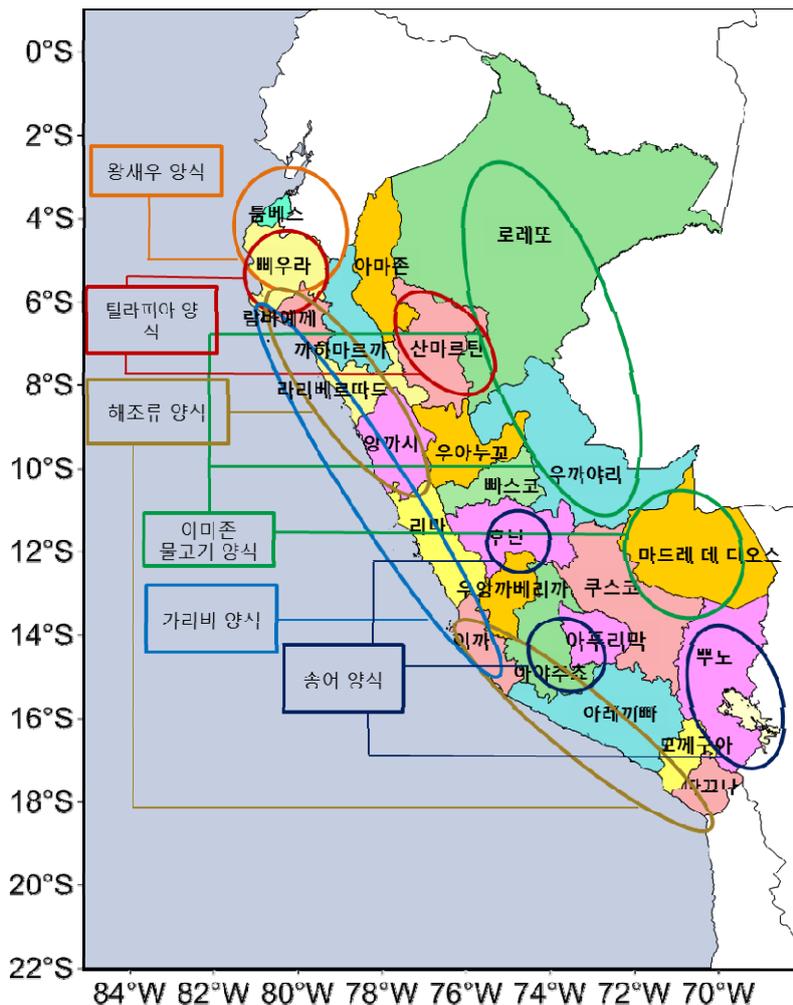
양식종	수출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Paiche (피라루쿠)	기 타	120,721	17,851	11,155	15,750	16,537
	소 계	2,058,616	106,266	457,769	447,440	568,003
Algas (해조류)	칠 레	22,848	0	0	0	0
	소 계	22,848	0	0	0	0
새 우	독 일		760,376	11,072		
	사우디아라비아		746,453	842,972		1,619,053
	아르헨티나		111,736			
	벨기에			8	110,124	
	캐나다		80,536	59,086		308,248
	칠 레	461,095	505,835	389,783		1,900,145
	한 국	2,151,179	3,361,361	2,207,968		4,777,908
	디나마르까			127,612		142,440
	에콰도르	321,739				
	아랍에미리트			106,447		384,730
	스페인	19,049,073	21,693,329	27,921,591	30,030,236	38,045,524
	미 국	90,595,911	113,751,962	80,961,184	70,539,035	79,953,668
	프랑스	5,088,139	9,859,650	14,924,194	10,224,914	13,710,633
	이탈리아	117,167	323,716	1,219,036	1,067,089	133,286
	자메이카			169,450		494,147
	일 본	1,930,645	1,073,470	822,039		
	멕시코			588		8,860,125
	네덜란드			547,465	256,212	1,126,045
	파나마	31,887	343,350		1,855,964	1,200,760
	포르투갈				153,206	467,677
	영 국	150,974	651,638	338,615		660,645
	도미티카		123,655			
	러시아	5,233,129	1,985,685	185,643		3,290,959
	태 국	383,175		246,483		
	대 만					21,533
	우크라이나	994,209	269,397			
	베트남					13,301,774
	기 타			5	5,599,608	15,215,686
소 계		126,508,322	155,642,154	136,680,844	129,452,466	171,009,122

양식종	수출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가리비	독 일	111,211	831,500	1,743,069	3,052,913	1,967,360
	호 주	4,493,971	2,535,994	119,195	326,400	1,150,295
	벨기에	12,641,408	14,908,364	10,560,559	12,025,715	4,859,731
	브라질	486,736	145,948	263,639		874,341
	캐나다	4,254,715	2,986,343	2,083,096		752,036
	중 국	2,359,724	1,345,403	1,747,757		1,416,105
	콜롬비아	264,812	284,031			
	한 국	185,795	212,313			
	디나마르크	1,147,476	212,313	453,109		1,032,108
	엘살바도르		25,111			
	스페인	2,618,379	2,828,933	2,466,153	7,483,163	3,299,294
	미 국	66,844,517	25,134,770	10,812,763	6,737,983	3,639,246
	프랑스	49,919,460	54,703,330	41,856,384	30,097,497	25,317,786
	홍 콩	11	72,132			
	이탈리아	4,476,480	5,501,624	2,818,550	2,033,308	1,604,646
	일 본	23	60	5		85
	리투아니아	292,022				
	마르티니까		66,240			
	멕시코		117,012	14,026		
	뉴질랜드	798,115	876,619	186,245	308,704	1,839,379
	네덜란드	225,321	4,052,115	4,548,198	10,111,436	4,879,472
	파나마	4,081,535	229,058			
	영 국	1,951,247	2,558,820	1,293,794	663,774	857,794
	러시아	233,281	65,657			
	싱가포르	50,983				62,252
	남아프리카	29,700				
	태 국	23	275			
	대 만		259,510			
	우루과이	58,764	59,402	3,360		
	베네수엘라	163,415				
	베트남	1,671,604				
	기 타	292	5,289,145		4,442,820	
	소 계	159,361,020	125,302,022	80,969,902	77,283,713	53,551,930
총 계	298,160,777	288,934,786	233,328,519	229,490,969	252,086,544	

## 2.2 페루 양식실태

페루는 해양은 물론 내수면도 양식에 적합한 수질 및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양식이 가능한 2천개 이상의 호수와 강이 전국에 걸쳐 있어 다양한 어종의 양식이 가능하다. 또한 어분(魚粉)과 어유(魚油) 주요 생산국으로 양식 활동에 투입 가능한 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양식업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양식업은 페루정부의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최근 양식업 승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어종이 양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양식지 개발도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페루 국가 양식개발계획(2010~2021년)에 따르면, 해안지역 대부분은 해조류 및 가리비 양식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내수면의 경우 다양한 지역에서 틸라피아, 송어류, 아마존 어류 양식을 위한 양식장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 페루 국가양식발전계획(2010~2021), 지역별 주요 양식종

2008년부터 페루 국방부가 해안지역에서 4.4만 헥타르, 티티카카 호수에서만 1.3만 헥타르를 내수면 양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왔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양식지역 활용률은 잠재력 대비 28.8%인 1.65만 헥타르에 불과한 수준이다. 내륙지역은 절반 정도만이 활용(송어 양식)되고 있어, 파이체(Paiche), 파코(Paco), 가미타나(Gatamina) 등 다양한 어종으로 확대 가능한 잠재 내수면 지역이 남아 있다.

생산 규모에서는 내수면 양식허가 지역의 경우 전체 양식장의 80%는 연간 2톤 미만 및 2~5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나, 해면 양식허가 지역은 87%가 연간 50톤 이상의 생산이 가능하다. 2013년 기준, 해면양식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지정된 지역은 66,950헥타르이다. 이 가운데 양식금지지역 5,889헥타르를 제외하면 양식가능지역은 61,061헥타르이며, 양식승인을 받은 지역은 50.3%인 30,720헥타르이다.

내수면 양식활동은 해면 양식에 비해 3배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0톤 이하 소규모 양식생산물은 가족 및 현지 시장에서 소비되며, 50톤 이상의 양식생산물은 냉장품, 냉동, 통조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상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표 2.6〉 해면양식 사용가능지역과 실제 사용면적

(단위: 헥타르)

지 역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영역	승인된 영역	양식금지지역 (통행목적)	이미 사용 계획이 있는 영역	평가 중인 영역	사용가능 영역
Tumbes (툼베스)	133.77	40.24	0.00	0.00	0.00	93.53
Piura (피우라)	27,939.54	24,854.18	4,080.60	7,145.41	635.87	5,209.16
Lambayeque (라바예께)	7,897.23	10.00	0.00	490.77	0.00	7,396.46
La libertad (라리베르타드)	15,430.25	2,011.17	1,154.03	846.76	0.00	8,774.87
Ancash (앙카시)	7,845.14	2,875.17	427.06	4,101.42	22.85	315.40
Lima (리마)	635.73	0.00	1.49	450.91	135.56	47.78
Ica (이카)	1,186.87	494.23	84.04	0.00	550.53	72.46
Arequipa (아레끼파)	301.05	84.40	138.74	0.00	6.54	71.37
Moquegua (모께구아)	2,628.13	318.97	3.00	62.97	0.00	2,243.19
Tacna (타크나)	2,952.51	32.00	0.00	35.60	0.00	2,884.92
총 계	66,950.22	30,720.36	5,888.96	13,133.84	1351.35	27,109.14

## 2.3 주요 양식어종 및 양식현황

### 2.3.1 틸라피아(Nile tilapia), *Oreochromis niloticus*

페루에서 틸라피아 양식은 1950년 사료생산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7년 2,665톤이 생산되어 페루에서 4번째로 중요한 양식대상종이다. 전체 양식면적은 160헥타르이며, 비우라, 산 마르틴이 주요 양식지역이다. 주로 지수식으로 연못을 활용하여 집약·반집약 양식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해안지역이나 산 마르틴지역에 양식이 한정되어 있다. 주로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력 증대를 위한 개선 부족과 낮은 기술력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물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아가미흡충의 발병을 증가로 양식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세계 최고의 어분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총양식 생산비용에서 상대적으로 사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높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사료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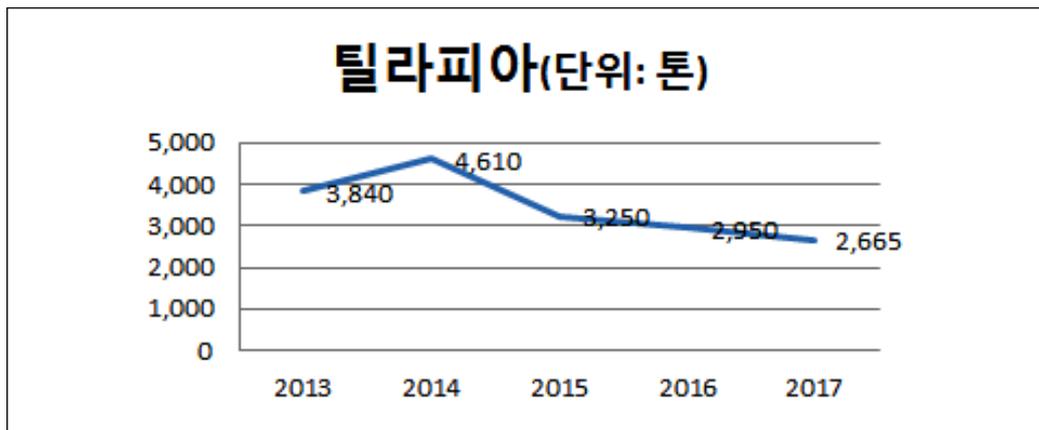
환경적인 측면에서 산란되어 부화한 자·치어가 양식장을 쉽게 빠져나가며 다른 양식장을 오염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영세양식장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중소양식장이나 대기업 양식장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틸라피아의 양식은 주로 고밀도 축양양식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다. 수컷치어를 구입하여 양식하지만 성장과정에서 고밀도 사육방식으로 인해 암컷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수컷만 양식하기 위해 더 많은 치어를 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식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암컷은 어체의 성장속도가 수컷에 비해 더디고 최대 어체의 성장치가 낮아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매우 낮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1kg의 틸라피어를 얻기 위해서 6~7마리의 치어를 구입하게 된다(통상적으로 1kg를 위해 2~3마리 필요하지만 현재는 6~7마리 필요). 페루에서 상품성이 좋은 틸라피아의 어체의 크기는 작은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어체가 작은 것은 내수용으로 판매가 되어지고 있으며 어체의 크기가 큰 것은 수출용으로 생산한다.

내수면 양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기동안 양식수의 공급과 높은 온도로 인한 산소부족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또한 모니터링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열악한 배관시스템 때문에 수로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며, 양식어가 양식장을 탈출하여 하류로 벗어남으로써 기타 통제하지 않은 어종과

섞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소규모 양식업체 측면에서는 양식장 지역 대여비용이 높으며, 소규모 생산업자들을 위한 양식대출제도가 없다. 또한 저가의 냉동틸라피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그 양이 빠르게 증가(2016년 80백만톤에서 2017년 180백만톤)함으로써, 틸라피아 양식업의 수익성이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림 2.4〉 틸라피아 양식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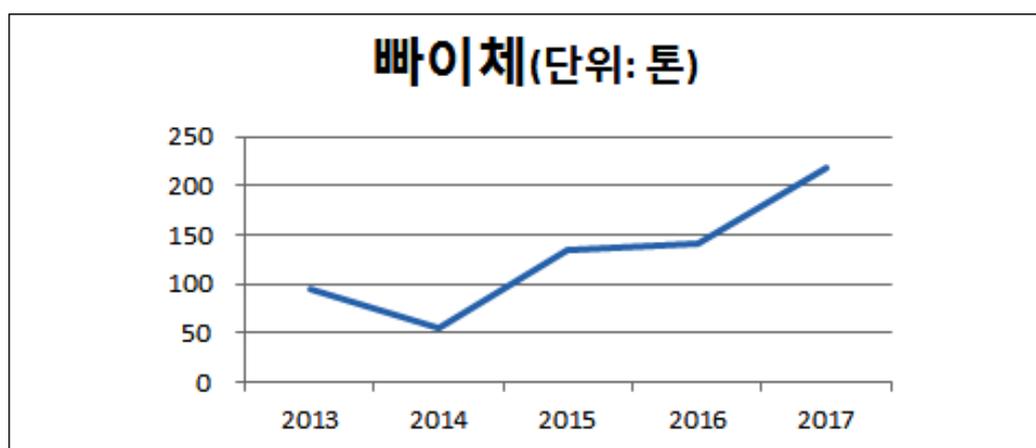
### 2.3.2. 파이체(Amazon fish), *Arapaima gigas*

파이체는 CITES(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있으며 페루 전체 57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다.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있는 동식물은 멸종 위기는 아니지만 부속서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가 될 수 있는 종들과 부속서 I에 올라있는 동물과 혼동되기 쉬운 종들이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있다. 수출국의 관리기관은 야생동물 균집에 손상이 없다는 사실인정과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파이체는 정글지역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종이며, 로레토, 후닌, 우카와리가 주 생산지다. 주로 반지수식 양식법을 이용해 양식하고 있다. 하지만 성성숙 유도나 수정란생산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자연에서 치어를 채집해 양성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료개발, 종 보전을 위한 유전자 서열 확보, 번식제어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양식장에서의 다량의 금지항생제와 사육과정중에 발생하는 중금속류 배출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또한 불법판매 및 금어기 동안의 효과적인 통제도 필요하다. 반지수식을 이용하여 양식하기 때문

에 양식장에 지속적인 사육수 공급을 위해 풀어야할 문제점이 많다.

미국이 주 거래 수출시장이나 아마존지역 밖과 국제시장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기술수준은 낮은 편이다. CITES등재로 인해 판매가 한정적인 이유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식생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지속적인 기관관리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 그리고 생산자를 위한 저금리 신용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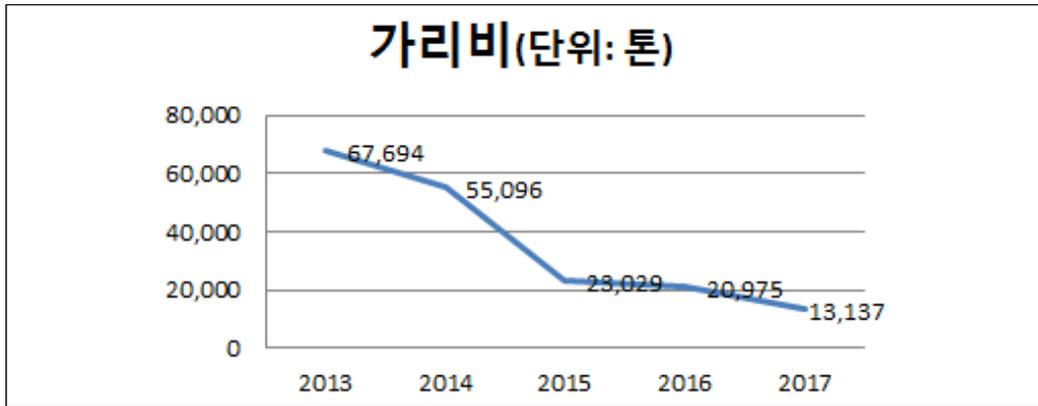
〈그림 2.5〉 빠이체 양식생산량 추이

### 2.3.3 가리비(Peruvian scallop), *Argopecten purpuratus*

가리비 양식은 페루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양식업(피우라주와 앙카시주가 주된 양식 지역)이다. 1980년부터 상업적 이익이 확보되었으나, 2017년 13,137톤(2013년 67,694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양식면적은 15,085헥타르 정도이며, 대부분 영세, 중규모 양식기업에 의해 반집약적으로 생산된다.

자연에서 수집한 수정란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으며, 프랑스로 50% 이상을 수출한다. 기후변화와 엘니뇨 등(높은 온도와 적조 발생)의 환경요인에 의해 생산량의 변동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2015년부터 시작된 엘니뇨에 의해 생산량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기술발전이 미흡하고 산란을 위해 깨끗한 물이 필요하나, 바닷물 공급이 더 필요할 경우에도 법규와 당국에 의해 추가 확보가 매우 어렵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리비의 껍질 폐기 문제가 있는데, 주로 모래를 사서 처리하고 있다. 위생문제로 2017년에 유럽 수출이 문제가 되었으나 2018년에는 재개되었다.



〈그림 2.6〉 가리비 양식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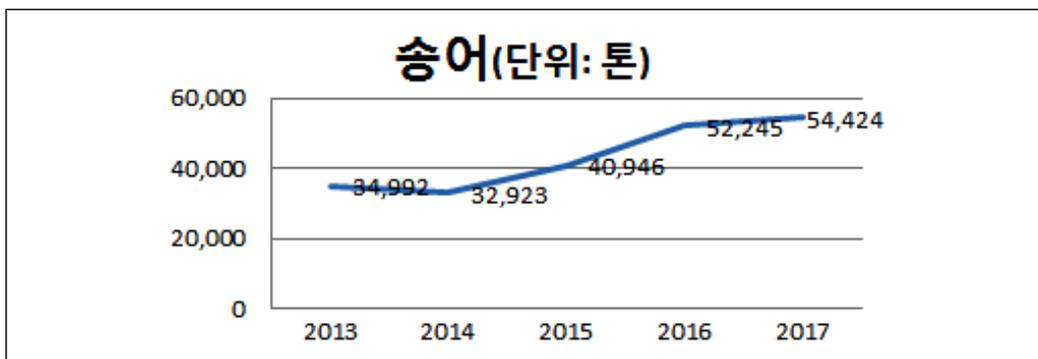
### 2.3.4 무지개송어(Rainbow trout), *Oncorhynchus mykiss*

1920년 단순낚시 목적으로 송어를 도입하였으나 2017년 54,424톤 생산하는 등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페루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양식업이 되었다. 전체 양식 면적은 2,672헥타르이며, 뿌노, 후닌, 우안까베리카에서 주로 양식한다. 대부분 대규모 기업에 의한 반집약적 양식이다.

티티카카 호수에 많은 대형 송어양식장이 있으며, 자동수질모니터링을 포함한 가두리 기술이 있어서(통제시스템, 수중카메라, 어류펌프, 분류기계 등) 건강성 측정을 엄격하게 한다. 송어양식은 완전히 민간양식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정란은 대부분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양식송어가 내수판매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의 50% 이상을 러시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지극히 제한적인 산업기술 발전과 양식장사용면적 사용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는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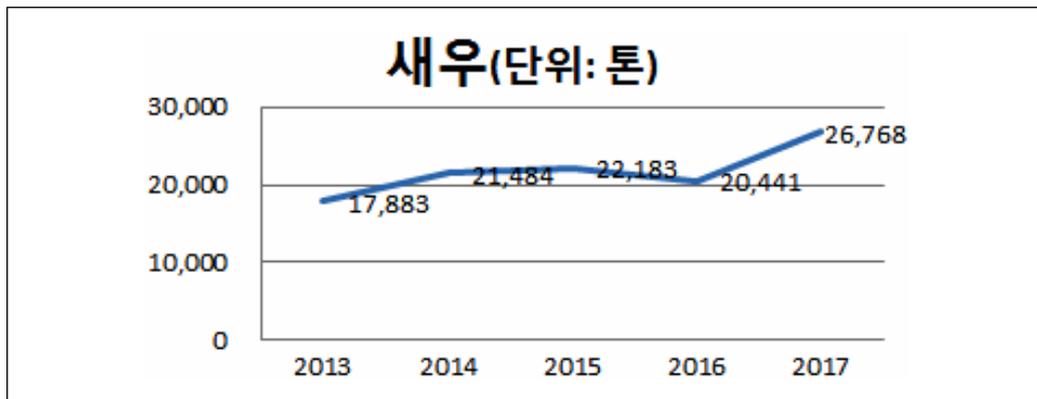
〈그림 2.7〉 송어 양식생산량 추이

### 2.3.5 흰다리 새우(Whiteleg shrimp), *Litopenaeus vanamei*

새우양식은 1970년 페루해양연구소(IMARPE)의 지원으로 실험적으로 착수하여, 2017년 26,768톤을 생산한 페루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양식대상종이다. 양식면적은 6,841헥타르며, 미국에 50% 이상을 수출한다.

양식 생산량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반집약적 양식이 우세하다. WSV, YHV, TSV, NHPV 등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문제를 극복하였으나 양식 확장측면에서 양식면적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종의 유전적 개선이 취약하고 적은 수의 양식기업으로 인해 양식기술산업 발전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그림 2.8〉 새우 양식생산량 추이

### 2.3.6 페루넙치(Fine flounder), *Paralichthys adsper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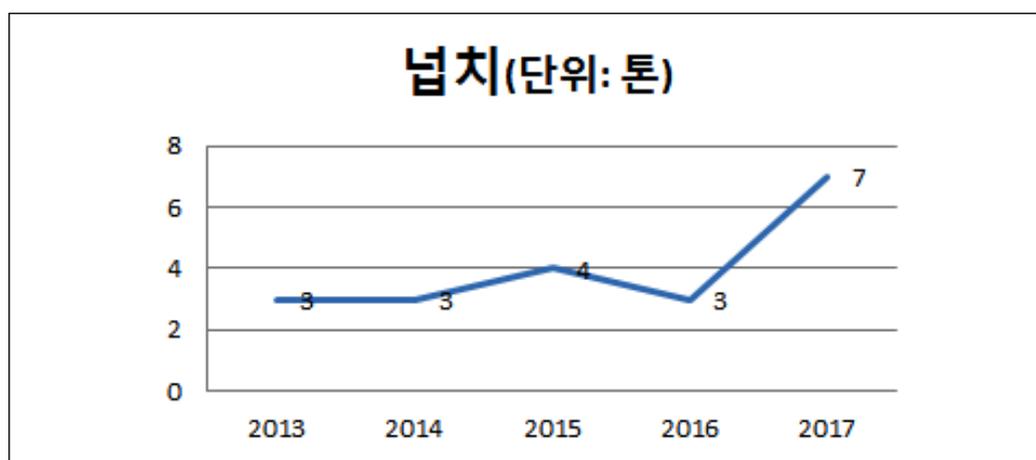
넙치는 흰살 생선으로서 주로 페루 고급요리인 세비체 요리재료로 사용된다. 주요 소비자는 슈퍼마켓과 레스토랑이다. 오랫동안 냉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유통기한은 최대 이틀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sup>3)</sup>.

넙치어업의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어획할 수 있으나 매년 어획량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최대 466톤(2003년), 최소 153톤(2008년)). 어획이 전혀 안 되는 계절도 있어서 어획량에 따라서 가격 변동 폭이 크다. 페루 넙치는 페루와 칠레연안에서 어획되며,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제한된 어획량으로 인해 지역시장조차도 수요를 충

3) 우리나라처럼 활어를 운반하기 위한 유동성 수조 이동차량이 없다.

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매년 어획된 넙치 모두 소비되고 있으며, 양식을 통한 공급은 자연산넙치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2017년 7톤 생산). 주로 판매되는 지역은 수도인 리마<sup>4)</sup>이다.

넙치의 양식은 아직 시험단계에 있다. 시험양식과 실험은 페루해양연구소(IMARPE) 실험실과 FONDEPES의 따끄나 양식센터,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페루의 넙치 양식기술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치타와 까브리야가 함께 실험 중에 있음). 기술적인 측면에서 육종, 치어 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에 의해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민간기업 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9〉 넙치 양식생산량 추이

## 2.4 페루 양식정책 및 주요 도전과제

페루생산부는 양식을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양식 진흥·개발법(Ley 27460) 및 시행령(DS 30-2001-PE)의 주요 목표에 양식활동을 포함시켰으며, 이후 국가적 개발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생산부 양식국(局)의 주도로 2010년 “국가양식개발계획(R.M. 001-2010-PRODUCE)”을 수립하였다.

국가양식개발 계획(2010~2020)은 양식 활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8개 실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페루정부는 2018년부터 세계은행 차관 용자를 통해 4천만 불을 추가로

4) 페루 국민 3천만명중에서 수도인 리마에 약 천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확보하여 총 1.2억불을 양식기술 개발 혁신과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투자하고 있다.

그동안 페루는 정책을 통해 양식산업의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으나, 생계형·소규모 양식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여전히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양식업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비합법적 창업은 제품의 판매 및 사료의 염가 구입 등과 같은 합법적인 사업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금융 지원제도 활용과 정부 당국의 규제 및 진흥활동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양질의 종자 확보 및 사료의 저렴한 구매와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술의 개발 및 혁신, 기술이전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페루는 중남미 국가와 비교할 때 중앙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 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기술지원 기관과 생산자간의 연계, 생산자 간 네트워크 구축이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민간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육종문제와 더불어 판매를 위한 위생상태가 가장 큰 문제다. 또한 너무 많은 규제조치는 양식산업진흥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냉장기술(인프라) 부족으로 페루는 중미지역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이 어렵다. 또한 어분가격의 상승이 양식비용 상승과 이익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리학적 요인과 기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적합한 양식 어종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 제3장 양식기업 관련 법 및 설립 절차

### 3.1 양식기업 관련 법 및 규정

#### 3.1.1 페루 양식회사 설립과 양식사업 개발을 위한 법 체계

페루 헌법(이하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페루에서 이루어지는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는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이는 외국 개인 및 법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70조에서는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 개인과 법인은 페루인과 같은 조건을 적용 받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은 페루 국경으로부터 반경 50km내 광산, 토지, 산림, 수역, 연료, 에너지를 획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입법령 제757호 - 민간 투자 성장법 제10조에 따르면 페루는 직원 이익배분, 법적 예치금, 각 사안별 책임소재와 관련된 의무에 대한 예단 없이 주기적 대차대조표에 따라 기업이 발생시킨 이익과 배당금 분배에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투자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총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다. 기업이 적절한 납세의 의무를 충족 할 시 이러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페루는 환율사안, 가격, 투자자와 기업간 참여비율 등이나 경제 활동 분야 및 종류, 기업의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차별적이거나 차등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과 법인 간 차별이나 차등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헌법 제58조에 따르면 페루 내 민간 주도사업은 페루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고려하여 자유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개발한다. 이러한 체계하에서 페루는 고용, 건강, 교육, 치안, 공공서비스, 인프라 활성화를 국가 발전 방향으로 잡고 있다.

페루는 부의 창출을 도모하며 노동의 자유와 사업, 무역, 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다양성을 인정한다. 국가경제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과 기업이 상생함으로써 유지된다. 이를 위해 공공, 민간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페루는 독과점 금지 정책을 지향하며 지킨다. 또한 기업의 지배적 위치 혹은 독점적 위치 남용을 지양한다. 어떠한 법이나 협약도 독점을 승인하거나 성립할 수 없다.

페루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 모두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해외 무역은 자유로이 이루어진다.

페루가 자국 내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추구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1991년 입법령 제662호가 제정된 후 페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간 권리와 의무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보장 내용을 인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안정적 사법 체계를 제공해왔다.

페루는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페루 법률이 승인하는 어떠한 기업 형태나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외국 및 국내에서 시행되는 투자를 활성화하며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페루의 사법제도가 국적(페루 또는 외국)을 이유로 투자자나 기업을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페루에서 시행된 외국인 투자는 자동적으로 승인 상태가 유지된다. 투자가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는 공적 보호와 혜택을 받기 위해 관할권이 있는 국립 공공 기구인 민간투자촉진기구(PROINVERSION)에 등록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등록 절차를 설명한다.

페루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무역과 산업의 자유, 수출과 수입의 자유를 누린다.

### 3.1.1.1 페루 양식업 투자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제 - 안정성 협약

민간투자촉진기구(PROINVERSION)는 페루를 대리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약(10년간 유효)을 체결할 수 있다.

- ① 협약 체결 시 제도의 안정성을 결과적으로 보장하고 해당 법인세 백분율의 안정성도 보장되므로, 협약에서 고려된 세율 이외의 세율에 영향 받지 않는다. 새로운 세법으로 인해 법인세 백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율은 해당 기업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수익을 갖도록 필요한 부분에서 낮춘다. 낮추어진 세율은 보장된 세율과 최소한 동일해야 한다.
- ② 유통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앞서 언급한 권리의 안정성
- ③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간 차별금지권리의 안정성. 이와 같은 혜택은 페루의 공공 기관 및 PROINVERSION에서의 차별적인 권리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 ④ 노동 계약 제도의 안정성

- ⑤ 통관 수수료 없이 재화를 수입하여 임시 접수처에 제출할 수 있는 통관 제도의 안정성

외국인 투자자들은 각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음의 투자를 입증하면 상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① 페루 기업의 계좌에 US\$5,000,000.00(미화 오백만 불) 이상을 예금(현금 출자)
- ② 주식/채권, 사회자본 혹은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US\$5,000,000.00(미화 오백만 불) 이상을 예금하고
  - 투자를 받는 기업이 20명 초과인 정규직 고용을 창출하고
  - 투자가 협약 이후 3년 동안 수출을 통해 US\$2,000,000(미화 이백만 불) 이상의 통화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안정성 제도는 협약 체결 이후 시작되며, 협약에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철회될 수 있다. 미충족 시에는 제재가 따르며 세금당국에 미납된 벌금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PROINVERSION은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고 협약을 실증하며, 협약 내용은 그 어느 부분이라도 수정될 수 없다. 안정성 협약과 관련한 분쟁은 중재재판소에서 다룬다.

라이선스 협약, 특허 및 브랜드 계약, 혹은 외국의 기타 특허권, 특정 제품의 명확한 판매액의 일정 백분율을 로열티로 지불하도록 정해져 있거나 특정 계산법이 정해져 있는 기술지원, 기초 엔지니어링, 관리 및 프랜차이즈 계약은 PROINVERSION에 제출함으로써 자동으로 등록되며, 이들이 카르타헤나 협약 위원회 결정 제291호의 제13조 및 제14조의 마지막 두 항에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한, 그 수량이나 백분율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외국 기업의 자회사로 여겨지는 국내 기업은 로열티 지급액에 대해 법인세 목적의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계약을 모기업이나 다른 자회사와 체결 할 수 있다. 이러한 로열티 지급은 세금 납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3.1.1.2 계약상 문제

페루 헌법 제62조는 계약의 내용이 계약 체결되는 시점에 유효한 법적 규제와 합치함을 보장한다는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계약 조건은 어떤 법률이나 어떠한 단계의 처분으로도 변경될 수 없다. 계약 관계로 인한 분쟁은 계약에서 미리 정하거나 법률이 지정한 체계에 따라 중재 재판소나 사법 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약은 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법으로 여겨지며 페루의 규제는 그 어떠한 공권력도 언급된 규정을 변경할 수 없음을 계약 체결 당사자들에게 보장한다.

### 3.1.1.3 일반 기업법 - 법률 제26887호

일반 기업법은 외국 당사자 및 국내 당사자가 출자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규제한다. 해당 법은 부수적 활동, 합작 투자 계약, 컨소시엄 협약 또한 규제한다.

페루 기업의 주식을 획득하거나 페루기업에 참여함에 있어 국내인과 외국인은 구별되거나 구분되지 않으며 최소 투자액이나 최대 투자액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다.

법률 제26887호에 의해 승인된 일반 기업법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기업을 규제한다.

- 주식합자회사
- 폐쇄형 주식회사
- 개방형 주식회사

상기의 세 가지 기업이 양식업 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이들에 대해 검토한다.

#### 가. 주식합자회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2명의 주주가 있어야 하는데, 주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으며, 페루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다. 주주 최대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는 정해진 기간 혹은 정해지지 않은 기간 내에 구성될 수 있다.

주식자본은 주주의 출자 정도를 고려하여 발행된 등록 주식으로 이루어진다.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는 미불입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각 주식은 청약이 되고 최소한 1/4(25%)는 지불되어야 한다.

주식은(간단한 사적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 주주는 이러한 주식 취득에 우선권을 가진다. 주주협약에 더 많은 제약이 포함될 수 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제3자들에 비해 주주가 우선권을 가진다.

이러한 형태의 회사의 중심 조직은 매년 3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 최소 일년에 한 번은 주주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최소 3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경영과 지침 제공에 책임이 있다. 설립법은 이사회의 이사의 최소 및 최대 인원수를 정의한다. 설립법이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는 주주일 필요가 없다. 이사는 외국인이거나 국내인일 수 있고, 페루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일 수 있다.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회 임기는 최소 1년에서부터 최대 3년이다.

대표는 주식회사의 법적 대표이다. 해당 직위는 국내인 및 외국 국적의 사람이나 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인이 해당 직위를 맡게 되는 경우, 사람이 해당 법인의 대표로 임명되어야 한다. 회사를 총괄하는 한 사람이 임명되는 직위가 대표이며, 여러 명의 관리자가 임명되는 경우 각 관리자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 기업법은 회사 관리자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한 제약을 두지 않지만, 관리자들은 페루에 거주해야 하고 거주 비자를 받아야 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 기업법은 주주 간의 협약 체결을 허용하는데, 주주가 정관에 등록되어 있거나 주식 등록부에 기명되어 있어야 회사나 제3자에 대해 유효하다.

#### 나. 개방형 주식회사(S.A.A)

개방형 주식회사는 주로 주식합자회사의 규칙과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개방형 주식회사는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나 주식 관련 협상에 대해 어떠한 제약을 두는 것도 금지된다.

개방형 주식회사는 스페인어 약어로 “SBS”로 알려진 보험·은행감독국의 감독 및 통제를 받는다.

아래 중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회사가 된다.

- 회사가 기업공개상장을 하는 경우
- 주주가 750명 이상인 경우

- 주식 자본의 35% 이상의 소유자가 주식 보유액이 자본의 0.002% 이하이거나 5%를 넘는 주주를 제외한, 175명 이상의 주주에 속하는 경우
- 회사 약관이 회사를 개방형 주식회사라고 여기는 경우

#### 다. 폐쇄형 주식회사

폐쇄형 주식회사에는 대체로 주식회사의 규칙이 적용된다. 폐쇄형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폐쇄형 주식회사는 20명 이상의 주주를 가질 수 없고 주식시장 공공 등록부에 주식을 기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태의 회사에서 이사회는 선택 사항이며 주주는 이사회를 생략을 고려하여 그 결정을 회사 약관에 지정할 수 있다.

주식 양도의 경우, 주주는 주식 취득에 있어 제3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 3.1.1.4 한국 자회사의 설립 및 설립 제도

회사의 자회사는 이차적인 기관으로 운영측면에서 회사의 본사에 종속된다.

페루 민법 제2073조는 다른 국가에 설립된 민간 법적 주체는 페루영토에서 규정에 따라 완전히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페루에 설립된 외국 기업의 자회사는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페루관세청(Administrative Tax Superintendence, SUNAT)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페루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한다.

자회사는 해당되는 법인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모회사 법인과 분리된 개별 회계를 해야 한다.

#### 3.1.1.5 세금제도

##### 가. 페루 내 수입원천에서 발생한 수입(IR)-개인:

소득세 적용을 위해 개인(사람 혹은 법인)은 거주인 혹은 비거주인으로 분류된다. 개인은 페루에서 영구히 거주하고/하거나 12개월 내 183일 이상을 거주 시 거주인으로 간주된다.

비거주인 개인의 경우, 소득세는 페루에서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즉, 페루에서 수행된 상업적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나 페루에서의 노동력이나 자본을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세금이 적용되며 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

개인에게는 세금 납부가 적용되며 페루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등록 거주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페루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은 세금 등록번호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의존적인 활동(월급을 받는 직원)을 하는 개인은 세금 등록번호를 받는 대신 등록 납세자로 처리되기 원함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 나. 법인세(IR) - 회사:

페루에 거주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제3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전부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과세 대상 순소득을 정함에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시, 필요하다면 경비와 비용이 공제될 수 있다.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예외 없이 사업연도는 회계연도와 일치해야 한다.

거주회사의 사업활동은 모든 순소득의 3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 ① 월별 분할납부

외국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는 연간 순법인세를 월별 분할 납부해야 하며 이는 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다.

- 월별 순소득에 따라 세금당국이 정한 고정 백분율을 고려하여 계산
- 전년도 계산된 법인세를 같은 년도의 총 순소득으로 나누고 그 결과 혹은 계수를 해당 월의 순소득에 곱하여 계산

### ② 법인세 손실

페루 법인세 제도는 손실에 대해서만 이월을 허용한다. 이러한 회사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a) 손실이 발생한 다음해부터 시작하여 4년 연속으로 손실을 이월하거나 (b) 손실이 완전히 상쇄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손실을 이월하지만 연간 과세 순소득의 50퍼센트로만 손실을 상쇄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③ 국경 간 거래

비거주 회사는 페루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

부할 책임이 있다. 페루 회사는 비거주 주체나 개인 각각의 소득세를 반드시 다음과 같이 원천 징수해야 한다.

- 로열티 30%
- 배당금의 배분 및 기타 형식의 이익 배분 4.1%
- 해외 대출에 대한 이자(특정 요구사항이 적용됨) 4.99% 혹은 30%
- 선박이나 항공기 대여로 발생한 소득 10%
- 기술지원(특정 요구사항이 적용됨) 15%
- 기타 소득 30%

#### 다. 부가가치세(IGV)

페루 내 재화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사용(서비스의 수입), 재화의 수입, 건설계약 및 건설업자의 부동산 최초 판매 등에 부가가치세 단일 세율 18%가 적용된다.

미지급세금은 각 기간 총 세금에서 재화와 수입의 구매, 건설 계약, 수입, 거주인 혹은 비거주인이 제공한 서비스의 사용에 대해 납부한 세금(세액 공제)를 공제함으로써 매월 결정된다. 미지급세금은 익월 첫 12일 내에 관세청(SUNAT)에 납부되어야 한다.

특정 월의 세금 입금액이 총 세금보다 큰 경우, 차액은 익월에 적용될 수 있다.

#### 라. 특별소비세(ISC)

특별소비세는 휘발유 및 휘발유 파생상품, 담배, 맥주, 와인 등과 같은 특정 상품의 판매와 수입에 영향을 준다. 도박, 복권, 빙고, 경마 등과 같은 특정 활동도 본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된다.

소비세율은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10%에서 55% 사이에서 변동된다.

#### 마. 지방세(District Taxes):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방세는 다음과 같다.

##### ① 재산세

도시지역이나 지방의 부동산의 유료 혹은 무료 양도는 이 세금의 과세대상이며 여기에는 소유권 유보와 관련된 판매도 포함된다. 토지 부지, 건물, 건물을 변경, 훼손,

파괴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는 고정시설 및 고정시설의 주요 부품은 과세대상이다.

재산의 소유주가 지불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연간 의무이며 한 해 동안 4분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② 알카발라세(Alcabala Taxes: 재산 양도세)

도시지역이나 지방의 부동산의 양도 구매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10UIT를 초과하는 재산가치에 3%로 적용된다.

### ③ 운영 허가증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방당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과세기준은 사무실 개설 면적에 사무실이 위치한 토지 요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세율은 활동의 종류에 따라 0.13%에서 0.25% 사이이며 분기별로 납부 가능하다. 운영 허가증의 연간 세율은 1UIT에 해당하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3.2 양식기업 설립 절차

### 3.2.1 서문

페루는 헌법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양식업 활동에 관련된 법·규제가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페루 당국의 공식 절차상 현행 주요 규정 및 일반적 관행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페루의 양식업 규정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 3.2.2. 페루에서 양식업체 설립하기

#### 3.2.2.1 페루 양식업체 설립 절차 및 고려사항

##### 3.2.2.1.1 개관

페루의 양식업은 생산부(Ministry of Production, PRODUCE) 및 수산·양식청(Vice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VFA)에서 관할한다.

허가(authorization) 및 양식업권(concession) 등 페루의 양식업 관련 허가 및 권리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페루에서는 천연자원이 국가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양식업 영위를 목적으로 개발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양식업권 보유자에 대한 규제, 감독 및 제재 소관 당국인 VFA에서 승인한 허가 또는 양식업권을 취득해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생산부와 수산·양식청이 양식업 허가 및 양식업권을 규제, 감독 및 부여하는 정부 당국이라는 하지만 양식업 활동 관련 소관 기관이 이 두 기관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MD)산하 항만·연안경비총국(General Directorate for Harbour and Coast Guards)은 페루의 해안, 강둑, 호수와 인접한 내륙 지역과 같은 공공 수역에 대한 점유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수산보건청(National Sanitary Fishing Organization, SANIPES)은 위생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담당한다. SANIPES 업무의 예시로는 수출입되는 양식업 품목들에 대한 위생 관리 승인과 더불어 위생 관리 절차 승인, 사업체 계획 및 향후 운영 방식 설계를 들 수 있다.

국립수자원청(National Water Authority, ANA)은 공공 수자원 이용 허가 및 바다, 강 또는 호수로의 폐수 방류 허가를 담당한다.

국립보호구역관리청(National Protection Service of Natural Areas, SERNANP)은 보호받는 내륙 습지, 바다, 강 그리고 호수 지역의 관리를 맡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양식업 활동은 이 기구의 견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론상 양식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 및 권리들은 수산·양식청의 VUA 양식 제79호(양식업 단일정보창구)(Form N° 79 of the VUA(Single Window for Aquaculture), 부록 4)라는 서류를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양식업 종사를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특정 허가 및 양식업권 부여에 앞서 모든 관련 정부 기관들 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적 및 현실적인 이유로 위의 VUA 시스템이 완전 구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 및 법인들은 양식업 활동을 위하여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스스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절에서는 취득 가능한 여러 가지 종류의 양식업 허가 및 권리가 요약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제3.3절에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필요한 허가 및 권리의 종류는 생산 카테고리(규모에 따라 상이), 양식부지(공유지 또는 사유지), 추후 생산 계획(해면

양식 또는 내수면양식)에 따라 다양하다.

### 3.2.2.1.2 양식업 관련 기본 규제

양식업 허가 및 권리는 입법명령 제1195호(Legislative Decree N°1195)에 의하여 승인되는 양식업 일반법(General Law of Aquaculture, GLA)과 최고명령 제003-2016-PRODUCE호(Supreme Decree N° 003-2016-PRODUCE)에 의하여 승인되는 양식업 일반규정(General Aquaculture Regulation, GAR)에 의거하여 적절한 개인 및 법인에게 주어진다.

양식업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페루 내 양식업에 대한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 상기 양식업 일반법의 제6조에서는 양식업을 “수중생물을 양식 하는 것으로서 사육과정에서 기술을 활용하고, 자연적인 생산량 이상으로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며, 식품 공급원과 일자리 및 소득원의 역할은 물론 환경 보존, 생물다양성 보존, 천연 자원 및 지역 활용 최적화와 조화를 도모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최적화하고, 수확된 결과물<sup>5)</sup>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양식업 일반법 제7조에서는 “다음의 활동은 양식업으로 규정된다. 양식용 배지 선정 및 조정, 종묘 구매 및 생산, 종묘 배치, 양식, 수확, 1차 가공, 조사, 개발 및 기술 혁신”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페루에서는 양식업이 환경, 생물다양성, 식품안전 및 수생물 자원 및 생산품의 건전성을 보호하면서 생산 다각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간주되고 규제되기 때문에 페루에서 국가적으로 양식업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페루는 양식업 활동 활성화가 국가 관심 사업임을 선언했다.

페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 양식업 공식화 및 강화, 그리고 생산 다각화를 목표로 한 조사,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하여 양식업의 발전을 독려하고자 민간 투자 장려를 위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적<sup>6)</sup>· 지역별 개발 계획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양식업에 특화된 인센티브가 마련되었으며, 가장 최근 도입된 인센티브는 양식업 허가 보유자(개인 또는 법인)를 대상으로 다음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양식업 일반법 개정안<sup>7)</sup>이다.

5) 현재 보고서에 포함 된 번역은 공식 번역이 아님.

6) <https://drive.google.com/file/d/1e1u1mG-rAD1LEQb4VcXw15h52kPinraF/view>

7) 입법명령 N° 1431

- ① 일반적인 30% 대신 15% 소득세 적용
- ② 수력 시설 및 관개 공사 등과 같이 양식업에 이용되는 자산에 일반적인 감가상각율 10%가 아닌 연간 감가상각율 20% 적용

위의 두 가지 혜택은 양식업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VFA는 양식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아래의 두 가지 체계를 수립하였다.

국립 양식업 토지 등록부<sup>8)</sup>(National Aquaculture Land Registry): 양식업이 가능한 지역, 자연 제방, 기존 허가 및 권리, 조업 구역, 검증된 수자원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한다.

국립 양식업 정보 네트워크 웹사이트<sup>9)</sup>: 양식업에 관련된 기본 정보 및 유관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3.2.2.1.3 양식업 허가 및 권리

페루에서 주어지는 양식업 허가 및 권리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양식활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허가 및 권리의 종류를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목표하는 양식업 활동이 페루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국가 규정을 인지하고 추후 양식업 활동에 필요한 허가 및 규정들도 파악하여 이에 맞추고 준수할 수 있다.

#### 3.2.2.1.3.1 분류 조건별 양식업 허가 및 권리

##### 가. 생산 카테고리(규모에 따라 상이)

양식업 일반법 제10조 및 양식업 일반규정 제19조는 양식업 규모 및 생산량(미터법에 따른 톤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양식업 허가 및 권리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① 자원 한정 양식업(스페인어로 AREL): 자급 양식업 활동의 종류로서 전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행해진다. 연간 총 생산량이 3.5톤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8) <http://catastroacuicola.produce.gob.pe/web/>

9) <http://rnia.produce.gob.pe/>

종류의 양식업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는 폐기물 및 폐수 방류에 관련하여 양식업 부문의 모든 기본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허가는 생산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 산하 지방생산국(Production Regional Directorate)에서 부여한다.

- ② 극소규모(micro)~소규모 양식업 기업(스페인어로 AMYPE): 상업적 양식 활동의 일종으로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소규모, 반집약적, 집약적 양식업이 포함된다. 연간 총 생산량이 150톤을 넘지 않는다. 생산 규모와 무관하게 종묘 생산과 관상용 어종 사육 또한 AMYPE로 분류된다. 조사 허가와 보호 구역 내 양식업 활동 또한 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AMYPE와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MYPE 허가는 개발 대상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 산하 지방생산국에서 부여한다.

해당 양식업 허가 및 권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 정부에 환경영향평가 진술서(Environmental Impact Declaration, 스페인어로 DIA)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리마 수도권 지역만 임시적으로 행정절차 통합규정(Consolidated Tex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스페인어로 TUPA)<sup>10)</sup> 절차 제59호(Procedure N° 59)에 의거하여 생산부(PRODUCE)에서 관할한다. TUPA 절차 제59호의 내용을 아래 표에 요약 제시하였다.

〈표 3.1〉 양식업 허가 및 권리 신청(행정절차 통합규정 절차 제59호)

절차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부정적 평가	승인 소요시간 (업무시 간 기준)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59	양식활동 환경영향 신고서(DIA)에 대한 인증 혹은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번호 27444, 제106, 113조</li> <li>• S.D. 번호 019-2009-MINAM, 제22, 30조</li> <li>• S.D. 번호 003-2016-PRODUCE, 제11조</li> <li>• 법률 번호 27444, 제44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식 번호 DGAAMPA-025를 통해 GDAAMP으로 보내진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띠</li> <li>2. 등록된 환경 자문사가 작성한 출력 되거나 디지털 양식의 DIA나 DIA 업데이트 2부</li> <li>3. 기술 검사</li> </ol>	양식 DGAAMP A-025	X	30(삼십) 일

10) <http://www.produce.gob.pe/index.php/texto-unico-de-procedimientos-administrativos-tupa>

③ 중~대규모 양식업 기업(스페인어로 AMYGE): 상업적 양식 활동의 일종으로 개인 또는 법인을 통해 행해지는 반집약적 및 집약적 양식업이 포함된다. 연간 총 생산량이 150톤을 초과한다. 해당 양식업 허가 및 권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통합규정 제1부속서(TUPA ANNEX 1)의 절차 제26호(Procedure N° 26)에 의거하여 사전 승인받은 위임 사항(terms of reference)을 포함하며 수산·양식청(VFA)의 승인을 받은 준(semi-) 상세 환경영향조사(Environmental Impact Study, 스페인어로 EIA-sd)가 필요하다. <표 3.2>에 TUPA 절차 제26호를 요약 제시하였다.

<표 3.2> 양식업 허가 및 권리 신청 절차(EIA-sd)

절차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부정적 평가	승인 소요시간 (업무시간 기준)
		수량 및 명칭	양식/ 코드		
26	수산업 및 양식업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환경 기기에 대한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번호 28611, 제17, 25, 51, 132조</li> <li>• 법률 번호 27446, 제3조, 제10조, 10.1, 10.2, 제11조, 11.1, 11.3, 제12조 12.1, 12.2</li> <li>• S.D. 번호 019-2009-MINAM, 제47 al 53 조 및 부속서</li> <li>• S.D. 번호 038-2001-AG, 제116조</li> <li>• E.O. 번호 25977, 제1, 29, 120조</li> <li>• S.D. 번호 012-2001-PE, 제2, 76, 77, 89, 90, 95, 120조</li> <li>• E.O. 번호 1195, 제1, 20조 제25조, 25.4</li> <li>• S.D. 번호 003-2016-PRODUCE, 제11, 24, 26-29, 36, 38조</li> <li>• S.D. 번호 019-2009-PRODUCE, 제1조</li> <li>• S.D. 번호 007-2016-PRODUCE, 제2조 및 S.D. 번호 015-2016-PRODUCE, 제1, 2, 3, 4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식 번호 DGAAMPA-001을 통해 DGAAMPA로 보내진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띠</li> <li>2. 신청인이나 대리인, 환경 자문사의 대리인(EIA를 위해 승인된 회사에 대한 생산부 등록명부에 유효하게 기명 되어있는 자문사), EIA 작성자가 서명한 출력되거나 디지털 양식의 EIA 2부</li> <li>3. 생산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기술 검사</li> <li>4. 수역(바다, 호수, 석호 및 기타 수역)에서의 양식활동과 관련</li> <li>5. 임시 권리증의 간단한 사본</li> </ol>	양식번호 DGAAM PA-001	X	90(구입) 일

상기 제시된 생산 범주와 상관없이 생물학적 과정 전반에 걸쳐 외래종이 도입될 경우 추후 양식업권 보유자는 생산부(PRODUCE)로부터 환경영향조사(EIA-sd)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조사 진행이 가능한 공인 컨설턴트 리스트는 다음 링크를 참조한다(스페인어).

<https://www.produce.gob.pe/index.php/dgsp/consultoras-y-laboratorios>

나. 양식지(공유지 또는 사유지)

양식업 허가 및 권리는 양식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이 공유지인가 또는 사유지인가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양식 활동이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한다(내륙 양식업).

추후 양식업 활동이 해안 구역, 강둑, 호안(lakeshore)과 같은 국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Concession)을 취득하여야 한다.

허가(Authorization)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해안, 강둑, 호수 등 내륙 수계와 인접한 사유지에서 행해지는 양식업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AMYGE의 경우 생산부(PRODUCE)의 TUPA 제2부속서(ANNEX 2)의 절차 제43호(Procedure N° 43)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AMYPE와 AREL 활동은 각 지방 정부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는다.

〈표 3.3〉 양식지 허가(절차 제43호)

절차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부정적 평가	승인 소요시간 (업무시간 기준)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43	AMYGE(중규모 및 대규모 양식 기업)에 대한 승인 • 법률 번호 27444, 제115, 122조 • E.O. 번호 1195, 제30조, 30.5, 제34조, 34.2 • S.D. 번호 003-2016-PRODUCE, 제33조 • S.D. 번호 019-2009-MINAM, 제22조	1. 양식 번호 DGA-003을 통해 DGA로 보내진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땀(양식에 EIA 인증서 번호를 표기)	양식 DGA-003	X	30(삼십) 일

허가는 최대 30년간 유효하며 TUPA 제2부속서(ANNEX 2)의 절차 제44호(Procedure N° 44<sup>11)</sup>)에 의거하여 생산부(PRODUCE)로부터 동일 기간만큼 연장받을 수 있다.

절차 제44호의 내용을 아래 표에 요약 제시하였다.

11) 이 절차는 권한 부여 조건을 수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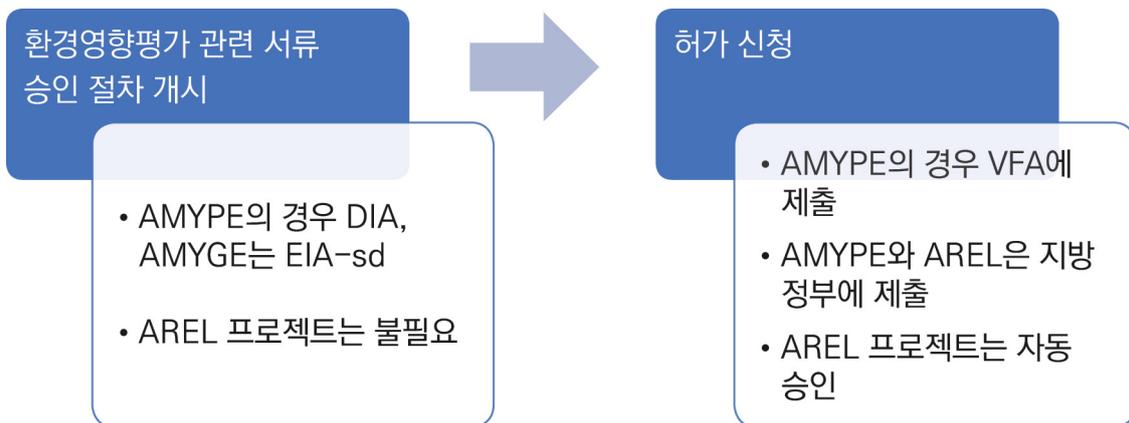
〈표 3.4〉 AMYGE에 대한 승인 갱신 및 수정(절차 제44호)

절차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부정적 평가	승인 소요시간 (업무시간 기준)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44	AMYGE에 대한 승인 갱신 및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번호 27444, 제51, 115, 122조</li> <li>• E.O. 번호 1195, 제34조, 34.1</li> <li>• S.D. 번호 003-2016-PRODUCE, 제33조</li> <li>• S.D. 번호 019-2009-MINAM, 제22, 30조</li> </ul>	1. 양식 번호 DGA-004를 통해 DGA로 보내진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땀(양식에 EIA 인증서 번호를 표기해야 하고 이는 권리의 유효성 내에서 제시되어야 함)	양식 DGA-004	X	30(삼십) 일

허가는 사유지의 소유주에게만 주어진다(정의상 내륙 양식업 활동이기 때문이다). 조사, 기술 개발 또는 혁신 프로젝트 착수를 목적으로 부여되는 유일한 허가권이다. 사유지에서의 AREL 활동에 대한 허가는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양식업 허가 및 권리 보유자는 양식업 활동 및 생산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수록한 진술서를 연 2회 제출해야 한다.

허가는 양식업 허가 및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허가 및 권리를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제재 적용의 결과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만 소멸된다.

양식업 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 양식업 프로젝트 허가 절차

반면에 양식업권(Concession)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유지로 간주되는 공용 구역에서 수행되는 양식업 활동만을 대상으로 주어진다(강, 호수, 석호 및 해안지역).

AMYGE 프로젝트의 경우 생산부(PRODUCE)의 TUPA 제2부속서(ANNEX 2) 내 절차 제36호(Procedure N°36)에 따라 양식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 AMYPE와 AREL의 경우 양식업권 부여 및 관리와 관련하여 각 지방 정부의 절차를 준용한다.

절차 제36호(AMYGE 양식업권)를 아래 표에 요약 제시하였다.

〈표 3.5〉 AMYGE 양식업권(절차 제36호)

절차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부정적 평가	승인 소요시간 (업무시간 기준)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36	AMYGE의 권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번호 27444, 제115, 122조</li> <li>• E.O. 번호 1195, 제30조, 30.5, 제33조, 33.2</li> <li>• S.D. 번호 003-2016-PRODUCE, 제33, 41조</li> <li>• S.D. 번호 019-2009-MINAM, 제22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식 번호 DGA-001을 통해 DGA로 보내진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띠. (양식에 EIA 인증서 번호와 임시 권리증 번호를 표기)</li> <li>2. 유효한 모델이 정하는 바, 신청인이 서명한 보존 및 투자, 양식업 생산 협약 프로젝트</li> </ol>	양식 DGA-001	X	30(삼십) 일

절차 제36호에 적시된 바와 같이 양식업권 신청에 앞서 2가지 선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양식 구역 점유를 위하여는 임시 점유권이 부여된 바 있어야 한다. 둘째, 생산 규모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에 대하여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양식활동 규모와는 별개로 타인에게 양도 불가능하며 배타적인 양식<sup>12)</sup>을 제출 및 승인받은 후에는 대상 수역에 대한 임시 점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양식 구역은 양식활동 규모 및 추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점유권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유지·관리된다.

임시 점유권을 통해 지정된 기간에 걸쳐 대상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될 기술적 타협안을 연구 및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

임시 점유권의 유효 기간은 프로젝트의 생산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AMYGE와 AMYPE 프로젝트의 경우 유효기간은 60일이며 개인 또는 법인이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문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동일한 유효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해면 양식활동의 경우는 페루 은행에서 발급받은 은행 예금증명서를(유효기간 90

12)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spij.minjus.gob.pe/Graficos/Peru/2016/Octubre/30/RM-423-2016-PRODUCE.pdf>

일) 제출하여야 임시 점유권을 받을 수 있다. 임시 점유권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 예금증명서 또한 90일간 추가 갱신하여야 한다.

은행 예금증명서상 필요한 금액은 점유하고자 하는 공공구역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점유하고자 하는 지역 1헥타르당 페루 조세 단위의 12%, 약자로 UIT라고 함). 예를 들어, 해안 구역 1,200헥타르를 대상으로 하는 양식활동의 경우 604,800 페루 솔만큼의 은행 예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REL의 경우는 임시 점유권의 유효기간은 30일이며 별도의 조건 없이 연장 가능하다.

양식업권은 최대 30년간 유효하며 생산부(PRODUCE)의 TUPA 제2부속서(ANNEX 2) 내 절차 제37호(Procedure N° 37<sup>13)</sup>)의거하여 동일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미납 벌금이 없다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절차 제37호를 아래 표에 요약 제시하였다.

〈표 3.6〉 양식업권 승인 갱신 및 수정(절차 제37호)

절차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부정적 평가	승인 소요시간 (업무시간 기준)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37	AMYGE의 권리 승인 갱신 및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번호 27444, 제51, 115, 122조</li> <li>• E.O. 번호 1195, 제33조, 33.2, 33.3</li> <li>• S.D. 번호 003-2016-PRODUCE, 제 41조</li> <li>• S.D. 번호 019-2009-MINAM, 제22, 30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식 번호 DGA-022를 통해 DGA로 보내진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땀(양식에 EIA 인증서 번호를 표기해야 하고 이는 권리의 유효성 내에서 제시되어야 함)</li> <li>2. 유효한 모델이 정하는 바, 신청인이 서명한 보존 및 투자, 양식업 생산 협약 프로젝트 제출</li> </ol> <p>갱신인 경우: 1. 기술 검사</p>	양식 DGA-002	X	30(삼십)일

공공 수역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식업권이 부여될 수 있다. 이 또한 최대 30년간 유효하며 수면, 지반, 해당 지역의 수면에 대해 수직으로 위치해 있는 수계를 포함한다.

생산부(PRODUCE)에서 부여하는 양식업권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 경매: 경매 낙찰자는 계약에 서명하고 양식업권의 조건은 총국 결의(Directorate

13) 이 절차는 또한 보증 조건을 수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Resolution)에 의거하여 정해진다.

- ② 발급을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직접적 발급: 양식업권에는 특정 경제적 타협안이 포함된다. 양식 구역, 기간 및 환경 관련 타협안 또한 총국 결의에 의거하여 정해진다.

양식업권에서 고려 대상이 되는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투자 및 양식 구역의 점진적인 점유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타협안의 달성은 의무이며 다음과 같이 실행되어야 한다.

- ① 1년 내에 허가 구역의 20%가 점유되어야 한다.
- ② 3년 내에 허가 구역의 50%가 점유되어야 한다.
- ③ 8년 내에 허가 구역의 100%가 점유되어야 한다.

위의 기간들은 양식업권이 발급되는 순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전체 또는 부분적인 구역이 점유되지 않는 경우).

양식업권 보유자는 생산부(PRODUCE)에 양식업권리비용(Aquaculture Fee)이라고 불리는 수수료를 매년 지불하여야 한다. 이는 전년도 점유 헥타르 및 페루 조세 단위에 따라 결정된다. 납부 기한은 매년 3월의 마지막 근무일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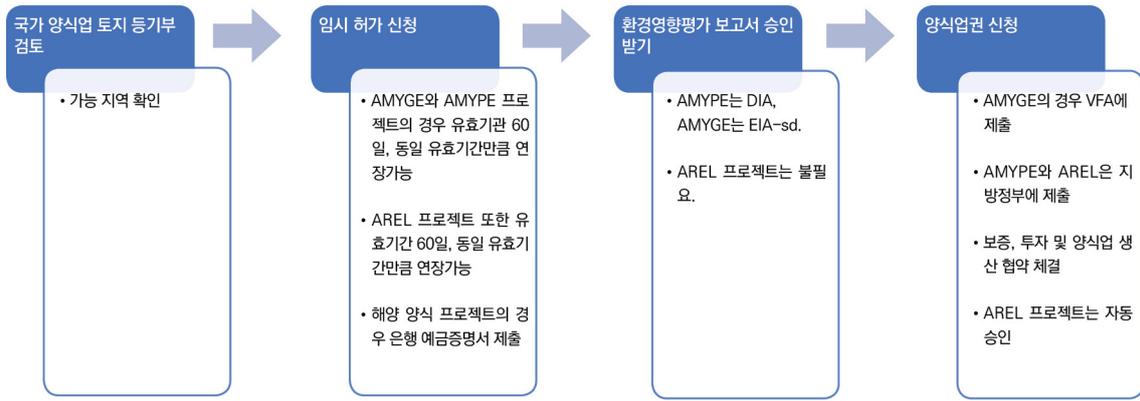
AREL 활동에 대한 양식업권 보유자는 위 수수료를 면제받지만 보존, 투자 및 양식업 생산 협약(Preservation, Investment and Aquaculture Production Agreement)에 서명하여야 하며, 양식업 활동 및 생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록한 진술서를 연 2회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 구역에 대한 양식업권은 국립 자연지역보호청(National Protection Service of Natural Areas, SERNANP)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식업권은 권리 보유자의 타협안 위반으로 인하여 보존, 투자 및 양식업 생산 협약이 폐기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규제 위반으로 인한 제재로 인하여 양식업권이 말소되는 경우에만 소멸된다.

권리 및 혜택 신청은 TUPA의 절차 36에 의거하여 생산부(PRODUCE)나 관할 지방 정부에 해야 한다.

요약하면,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직접적 취득 방식을 통하여 양식업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림 3.2〉 양식업권 직접 취득 절차

AMYGE의 경우 생산부(PRODUCE)의 TUPA 제2부속서(ANNEX 2) 내 절차 제49호 (Procedure N° 49)에 따라 허가 및 양식업권 양도가 가능하며, AMYPE와 AREL 프로젝트도 지방 정부에서 정하는 유사한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 허가 및 양식업권을 인계 받은 당사자는 기존 허가 및 양식업권의 의무 및 조건을 모두 인계받게 된다.

양식업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할당된 구역<sup>14)</sup> 중 최소 20%를 점유한 상태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양도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양도를 신청하기 이전에 담당 정부 기관과 보존, 투자 및 양식업 생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양식업권 소지자의 사망 시 상속권자는 최대 6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에 대한 상속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절차 제49호를 아래와 같이 요약 제시하였다.

〈표 3.7〉 양식업권 허가 및 권리의 양도(절차 제49호)

절차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부정적 평가	승인 소요시간 (업무시간 기준)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49	AMYGE 허가나 권리의 양도 법률 번호 27444, 제51, 115, 122조 • E.O. 번호 1195 • E.O. 번호 1195, 제33조, 33.1, 33.2조, 제34조, 34.2 • S.D. 번호 003-2016-PRODUCE, 제10, 33, 41, 47조	1. 양식 번호 DGA-005를 통해 DGA로 보내진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띤 권리 양도의 경우 1. 유효한 모델이 정하는 바, 신청인이 서명한 보존 및 투자, 양식업 생산 협약 프로젝트 제출 2. 기술 검사	양식 DGA-005	X	14(십사) 일

14) 양식업권을 인계받은 당사자가 사망 한 경우는 예외

### 3.2.2.1.3.2 목적에 따른 양식업 특별 범주

양식업 일반법에서는 상업적 양식업에 대한 상기 허가 및 권리와는 별개로 아래와 같은 양식업 활동에 대한 특정 종류의 허가 및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 권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사유지 내에서 양식업 영위를 목적으로 조사를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조사 프로젝트, 승인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임시 점유권 또한 첨부하도록 한다.

양식업 활동이 공유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각 조사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결과에 비추어 양식 구역 및 필요 기간을 분석하고 이를 각 조사 프로젝트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상기 허가 신청 시 외래종 도입 및 양식을 예정하고 있다면 환경영향평가에 외래종이 관리 구역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또한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 ① 어족자원 확충 및 재확충

어족자원 확충(Stocking)은 외부 자연 서식지 또는 양식지에서 유래하는 종묘를 활용하여 해양 또는 내륙 서식지로 새로운 종을 들여오는 행위를 뜻한다. 만약 외래종을 들여오는 상황이라면 기존 IMARPE 기술 허가를 감안하여 생산부(PRODUCE)로부터 특별 허가(special dispensation)를 취득하여야 한다.

어족자원 재확충(또는 보충, Restocking)은 해양 또는 내륙 서식지의 생물량(바이오매스)을 유지 또는 보충하고자 진행되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러한 활동은 생산부(PRODUCE)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 기관, 대학교, 비정부기구단체(NGO)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두 가지 활동 모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종묘 및 환경에 대한 소유권이나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② SINACUI 산하 정부 기관들의 역할

해양 및 내륙의 양식 구역 관리(항만·연안경비총국[DICAPI], 방위 부문), 수자원 관리(국립수자원청[ANA], 농업 부문), 생산 사슬(production chain) 전반에 걸친 위생 관리, 가축 및 공공 보건 관리(국립수산물보건청[SANIPES], 생산부 산하) 및 자연보호구

#### 역 관리(국립보호구역관리청, 환경 부문)

여러 행정 기관은 정부 조직 내에서 고유한 권한 및 관할권을 부여받으며, 이에 따라 SINACUI에는 다양한 행정 기관들이 관여한다. 다음에서는 SINACUI 체제 내에서 양식업 허가 및 권리<sup>15)</sup>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들과 절차들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였다.

SINACUI 내 모든 절차들은 생산부(PRODUCE) 산하 수산·양식청을 통해 개시되어야 하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부분의 절차들은 담당 정부 기관에서 직접 개시하고 있다.

#### 가. 해양 및 내륙 양식 구역 관리(항만·해양경비총국[DICAPI], 방위 부문)

항만·연안경비총국(DICAPI)은 행정절차 통합규정(Consolidated Tex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DICAPI, 스페인어 약어로 TUPAM)에 의거 2가지 주요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부록 3 참고). 그 중 첫 번째는 수역 허가(Clearance of Water Areas)를 위한 절차 제116호(Procedure N°116)로서 이론적으로는 생산부(PRODUCE)에서 취득하여야 하고 이미 국립 양식업 토지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는 해양 구역 이용 허가를 위한 절차 제117호(Procedure N° 117)로서 이론상 VUA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따라서 동 절차에서 제시하는 기술적인 필요 조건에 대한 정보가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절차 제117호는 허가 및 권리 소지 신청자가 직접 DICAPI에 요청할 수 있다.

면허는 신청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공개 입찰) 총국 결의에 서명하는 경우(직접 취득)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상기 절차들은 양식업권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 양식업권은 국가 자산으로 간주되는 공유지 및 해양에서 행해지는 양식업에 대한 유일한 허가 및 권리라는 점에 유념하도록 한다.

---

15) 허가 및 권리 소지 신청자가 양식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VFA에 따른 이전 절차와 별개로

〈표 3.8〉 해양구역 허가절차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 수 료	승인 종류	승인 소요시간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116	생산부의 요청에 의한 동물 혹은 수생식물 종에 대한 조 사, 종자 및 부화장 개발을 위한 수역 허가에 대한 이사 회 결의의 승인  • 법률 번호 27460 • S.D. 번호 030-2001-PE	1. 수역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생산부 관 할 분야에서 환경국장에게 보낸 서류  2.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파일 2부를 첨부 a. 개발해야 하는 활동의 종류 b. 생물학자, 어업공학자 혹은 지리학자 가 서명한 원본 지도 1부, 이들의 전문 자격증을 첨부  - 일정 비율로 축소 제작된 안내도로, 지리학적 지역 내에서 프로젝트를 가 시화할 수 있게 하는 안내도  - 일정 비율로 축소 제작된 지도로, 다 음의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 지도: • m <sup>2</sup> 단위로 나타낸 프로젝트에 소요 될 지역의 면적, UTM 및 GPS 정점 좌표 • 안내도 및 상세 지도는 해양 수로 측량술 및 항해에 대한 지시에 따 라 편집된 해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원본 지도)	분야: 항만 및 해안 경비 총국  편제부대: 환경 국장  부서: 강변 및 대륙붕  E-05	무 료	사전 평가 - 긍정적	이십(20) 업무일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 수 료	승인 종류	승인 소요시간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3. - 행정 수수료  비고: 해사 감독관이 해당 지역을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편 및 물류는 생산부가 제공한다.				
117	<p>동물 혹은 수생식물 종에 대한 조사, 종자 및 부화장 개발을(양식, 해양양식 및 유사한 내용) 위한 수역 사용권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번호 26620</li> <li>• S.D. 번호 028-DE/MGP 제B-010105조(inciso a)</li> <li>• 입법 명령 번호 1032</li> <li>• SD 번호 020-2008-PROD UCE</li> </ul>	<p>1. 관할권이 있는 해사 감독관을 통해 DICAPI 환경 국장에게 제출된 요청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이름, 나이,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li> <li>b. 신분증 번호</li> <li>c. 납세자 번호</li> <li>d. 신청자의 공공등록정보</li> </ul> <p>2. 다음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 3부 및 CD 1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생물학자나 어업 공학자가 서명한 보고서로 활동의 종류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술적 보고서. 해당 생물학자나 어업 공학자의 전문 자격증을 첨부</li> <li>b. 수평적·수직적 컨트롤 지점에서의 등록된 각도, 거리, 방위각 및 수직·수평 폐쇄계산이 있는 방법론적 다이어그램을 첨부</li> </ul>	<p>분야: 항만 및 해안 경비 총국</p> <p>편제부대: 환경 국장</p> <p>부서: 강변 및 대륙봉</p> <p>E-06</p>	30.974% UIT  S/. 1,300.908	사전 평가 - 긍정적	삼십(30) 업무일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 수 료	승인 종류	승인 소요시간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혹은 1차, 2차 및 또는 3차 국가 측지망(National Geodetic Network)에 언급된 수평·수직적 컨트롤 지점을 등록된 각도, 거리, 방위각 및 수평·수직 폐쇄 계산 및 혹은 지형좌표계와 함께 방법론 다이어그램을 첨부</li> <li>- 지형좌표계가 PSG 방법을 통해 작성되었으면 WGS-84 Datum을 참조하여 토목엔지니어 혹은 지리학 엔지니어에 의해 서명된 전문 투자서를 첨부</li> <li>c. 해당지역 수심도 조사, 토목공학자나 지질공학자, 혹은 수로측량 전문가 1명이 서명하고(서명자의 전문 자격증 첨부) 측지계 WGS- 84를 사용할 것</li> <li>d. 수평 혹은 수직 스테이션 혹은 지면점에 대한 설명. 방위 및 지역 사진 포함</li> <li>e. UTM 및 GPS 방위, 축척비율 1/5,000~1/50,000인 측지계 WGS- 84로 작성된 입지계획</li> <li>f. 주변 수심도 원본 및 m<sup>2</sup>로 나타낸 사용되어야 하는 수역 면적, 측지계 WGS-84에 따라 UTM 및 GPS로 정점 좌표를 표시할 것. 또한 상세한 시추</li> </ul>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 수 료	승인 종류	승인 소요시간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보고서도 제출 g. HIDRONAV-38 규제에 따른 매체 및 특성, 해상 신호, 적절한 경우 UTM 및 GPS 방위 포함 h. 생산부가 수여한 임시 권리증의 이사회 결의 1부 i. 생산부가 승인한 EIA 승인 1부 3. 행정 수수료 비고 1. 지도 및 연구는 해양 수로측량술 및 항해에 대한 지시 및 혹은 국립 지리학 연구소가 편집한 해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토목 공학자나 지리 공학자(전문 자격이력 첨부) 혹은 수로측량 전문가 1명의 서명이 있어야 함 2. 연간 수수료는 수역 사용권이 승인되는 즉시 Banco de la Nacion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납입 영수증을 해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3. AMYGE와 관련 있는 자들은 요구사항을 VUA를 통해 제출해야 함.				

양식업 부문은 수자원 사용료 면제 대상이며 따라서 양식업 활동에 대한 수자원 사용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 또한 유념하도록 한다.

#### 나. 수자원 관리(국립수자원청[ANA], 농업 부문)

국립수자원청(ANA)은 내륙의 양식업을 관할하는 부처로서 양식업이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감독 또한 담당하는 바, 수산양식청(VFA)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양식업 목적의 수자원 이용 면허’(License for Water Use with Aquaculture Purposes)의 발급 또한 담당한다. 이러한 절차는 국립수자원청 행정 절차 통합규정(TUPA ANA)의 절차 제16호(N° 16)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록 5 및 <표 3.9>에 요약 제시되어 있다.

<표 3.9> 양식업 목적 수역사용 허가(절차 제16호)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수료	승인 종류	승인 소요시간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16	양식업 목적의 수역사용 허가증 법적 근거: • 법률 번호 27444, 제113조(04/11/2001) • 법률 번호 29338, 제15조; 7, 53 (03/31/2009) • 입법 명령 번호 1246, 제5조(11/10/2016) • S.D. 번호 001-2010-AG, 제85, 86조 (03/24/2010) • S.D. 번호 006-2010-AG, 제38조 lit. c(07/08/2010). • S.D. 번호 023-2014-MINAGRI, 제1조 l(12/27/2014)	1. ANA로 요청 2. 검사 수수료 납입 서약 혹은 납입 3. 행정 수수료 4. 적용 가능한 경우 규제 부속서 16 또는 17에 따른 지하수 사용 허가증을 위한 기술적 보고서	양식 001 양식 002	4.65% UIT S/.195.3	사전 평가-부정적	십오(15) 업무일

양식업 목적의 수자원 이용 면허를 신청하기에 앞서 따라야 할 절차는 두 가지가 있다.

수력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하다면 TUPA ANA의 절차 제8호(Procedure N° 8)(부록 5 참고)에 의거하여 ‘양식업 목적의 수자원 개발을 위한 수력 기반시설 공사 시행 허가 (Authorization for the execution of hydraulic infrastructure works for water resources development with aquaculture purposes)’를 신청해야 한다. 반대로 수력 기반시설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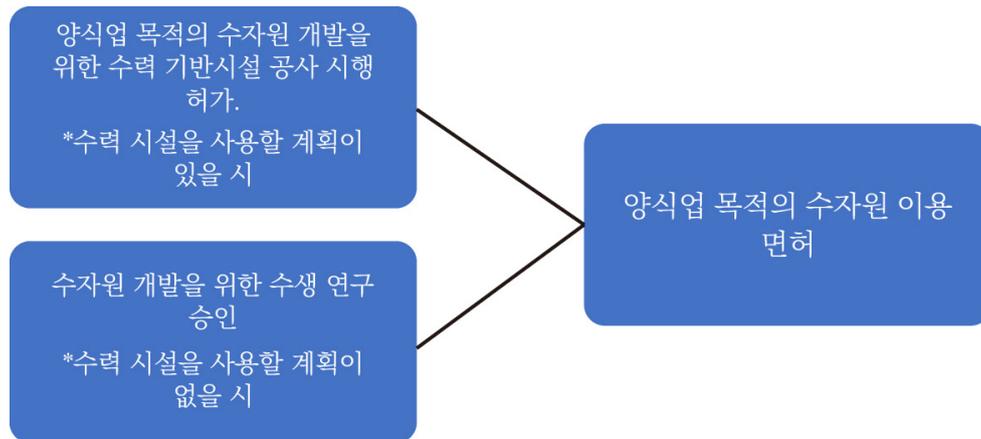
계획이 없다면 TUPA ANA의 절차 제13호(Procedure N° 13)(부록 5 참고)에 의거하여 ‘수자원 개발을 위한 수생 연구 승인(Approval of hydric studies for water resources development)’을 신청해야 한다.

상기 두 절차를 <표 3.10>에 요약 제시하였다.

<표 3.10> 양식업 목적 수자원개발 수력기반공사 및 수생연구 승인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수료	승인 종류	승인 소요시간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8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 개발을 위한 수력 기반시설 작업 집행 승인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번호 27444, 제113조(04/11/2001)</li> <li>• 법률 번호 29338, 제7조; 15, 12; 104, 106(03/31/2009)</li> <li>• 입법 명령 번호 1246, 제5조(11/10/2016)</li> <li>• S.D. 번호 001-2010-AG, 제212.1조, 제224조(03/24/2014)</li> <li>• S.D. 번호 006-2010-AG, 제38조 literal d(07/08/2010)</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NA로 요청</li> <li>2. 적용되는 경우, 환경 인증서 사본</li> <li>3.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 승인한 EIA 승인. 기술 파일이나 개요서에 첨부하여 제출. 혹은 적절한 경우 규제의 양식 11, 12, 13, 14, 또는 15에 따른 기술적 보고서. 전문 자격이 있는 엔지니어가 서명해야 함</li> <li>4. 양식에 따라, 검사에 대한 비용 납입 서약서</li> <li>5. 행정 수수료</li> </ol>	양식 001 양식 002	4.71% UIT S/.197.82	사전 평가- 부정적	삼십(30) 업무일
13	수자원 개발을 위한 수생 연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번호 29338, 제47조(03/31/2009)</li> <li>• 입법 명령 번호 1246, 제5조(11/10/2016)</li> <li>• S.D. 번호 001-2010-AG, 제79조 3, 81(03/24/2010)</li> <li>• S.D. 번호 006-2010-AG, 제38조 lit. d(07/08/2010)</li> <li>• S.D. 번호 023-2014-MINAGRI, 제1조(12/27/2014)</li> <li>• S.D. 번호 022-2016-MINAGRI, 제1조, 2조(12/22/2016)</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NA로 요청</li> <li>2. 수자원 개발을 위한 수생 연구 승인을 위한 수리학적 연구 혹은 기술적 보고. 규제의 양식 06, 07, 08, 09, 10에 따름</li> <li>3. 검사 수수료 납입 서약</li> <li>4. 행정 수수료</li> </ol>	양식 001 양식 002	4.56% UIT S/. 191.52	사전 평가- 부정적	삼십(30) 업무일

면허는 신청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공개 입찰) 총국 결의에 서명하는 경우(직접 취득)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림 3.3〉 양식업 목적 수자원 이용면허 승인 절차

양식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1차 가공 공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폐수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폐수처리허가(Authorization for Water Dumping)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 또한 면제된다.

상기 언급한 절차와는 별개로 국립수자원청은 양식업이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관리해야 하며 여기에는 1차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허가 및 권리 취득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승인받고자 게시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생산부<sup>16)</sup>에 긍정적인 기술적 의견을 전달한다.

#### 다. 생산 체인 전반에 걸친 위생 관리, 가축 및 공공 보건 관리 (국립수산보건청[SANIPES], 생산 부문)

국립수산보건청(SANIPES)은 위생, 가축 및 공공 보건을 관할하는 정부 기관으로 언제든지 현장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허가 및 권리 보유자는 위생 관리 규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허가 및 권리를 효과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설의 디자인, 건설, 장비, 유지 및 운영, 건축 전후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위생 상태를 증명하여야 하며, SANIPES의 행정절차<sup>17)</sup> 통합규정(TUPA SANIPES)에는 시설, 상품, 먹이, 부화장, 수확, 수의약품, 수출입, 운송 수단 등에 대하여 부문별로 달라지는(수산

16) ANA의 기술 의견은 구속력이 있다.

17) <http://www.sanipes.gob.pe/web/index.php/es/tus-formularios>

업 또는 양식업) 여러 가지 위생 인증(sanitation clearance) 절차가 수록되어 있다(부록 6에 수록된 절차 제36호[Procedure N° 36<sup>18)</sup>]참고).

시설에 대한 사전 위생 인증과 관련하여 SANIPES<sup>19)</sup>는 기업체 유형별 절차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표 3.11〉 기업체 유형별 각종 시설에 대한 사전위생 인증 요구사항

요 건	이매패류 (bivalve mollusc) 양식장 <sup>15)</sup>	새우 양식장 <sup>15)</sup>	어류 양식장 <sup>15)</sup>	부화장 <sup>20)</sup>	1차 가공 공장: 조개류 <sup>21)</sup>	먹이(식물)	조개류 하역 시점
신청서	X	X	X	X	X	X	X
지방 정부 기관 또는 생산부의 결의	X	X	X	X	X	해당 사항 없음	X
HACCP 매뉴얼	X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X	X	X
양식업 우수관행 매뉴얼	X	X	X	X	X	X	X
H&S 매뉴얼	X	X	X	X	X	X	X
기술적 메모리(descriptive memory, 종이 및 가상 복사본 <sup>22)</sup> )	X	X	X	X	X	X	X
회사의 법률 대리인이 체결한 연간 부화 및 수확 계획	X	X	X	X	X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종이에 인쇄된 청사진 2부 및 디지털 사본 <sup>23)</sup> 1부(위치, 지역 분포 및 위생 시설)	X	X	X	X	X	X	X
절차 수수료	X	X	X	X	X	X	X
검사료	X	X	X	X	X	X	X
수계 이용 허가증 사본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X	해당 사항 없음
운영 허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X	해당 사항 없음
절차 제9호(N°9) 양식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X	해당 사항 없음

18) TUPA SANIPES 절차 제36호: [http://www.sanipes.gob.pe/tupa/tupa\\_\\_36.php](http://www.sanipes.gob.pe/tupa/tupa__36.php)

19) 스페인어로 된 출처: [http://108.59.10.36/procedimientos/9\\_I01-SDCPA-SANIPESVALUACIONPARAHABILITACIONSANITARIADEINFRAESTRUCTURAPESQUETRAYACUICOLASrev02.pdf](http://108.59.10.36/procedimientos/9_I01-SDCPA-SANIPESVALUACIONPARAHABILITACIONSANITARIADEINFRAESTRUCTURAPESQUETRAYACUICOLASrev02.pdf)

20) TUPA SANIPES 절차 제13호: [http://www.sanipes.gob.pe/tupa/tupa\\_\\_13.php](http://www.sanipes.gob.pe/tupa/tupa__13.php)

21) TUPA SANIPES 절차 제7호: [http://www.sanipes.gob.pe/tupa/tupa\\_\\_7.php](http://www.sanipes.gob.pe/tupa/tupa__7.php)

22) 이는 처음으로 허가를 얻거나 구조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하며, 이 경우 모든 요구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라. 자연보호구역 관리(국립보호구역관리청[SERNANP], 환경 부문)

국립보호구역관리청은 양식업 영위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신청한 지역이 보호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만 검토 과정에 참여한다.

이 경우 생산부는 승인 과정에서 SERNANP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문적 견해를 요청한다. 이는 전적으로 내부적인 프로세스이며 신청자는 수산·양식청에서 요청하는 사안 외에 다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

23) 이는 처음으로 허가를 얻거나 구조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하며, 이 경우 모든 요구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 제4장 고찰(경험과 교훈)

본 장에서는 양식기업인 면담과 관련 자료 분석을 토대로 페루에서 양식기업의 설립과 운영 시 처하게 되는 여러 어려운 점들과 이의 극복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4.1 양식회사 설립 관련

양식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페루 정부 혹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절차는 크게 ① 부지 확보, ② 양식생산 허가, ③ 시설 및 생산물 위생 허가, ④ 판매 허가(수출 등)의 네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 4.1.1 부지 선정 및 확보

양식 부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양식종의 최적의 온도와 염분을 고려해야 하며, 해수/민물 공급여력, 전력, 도로 등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민물새우의 경우는 최적의 온도가 32도이기 때문에 상시 온도가 높은 페루 북부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나 댐이 근처에 있어 건기동안 물 공급이 원활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리비 또한 해수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하나 엘니뇨 등의 요인에 의해 해수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케이지를 깊은 바다로 이동시키거나 좀 더 차가운 해수로 옮길 수 있도록 양식장을 여러 군데 운영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대부분의 큰 양식회사의 경우는 수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냉장창고, 수출가공공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근처에는 큰 도로가 있다. 해수처리, 냉장, 가공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자체 전력이 불안하거나 외지의 경우는 자체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설치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는 기존 부지 소유자에게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다. 다만, 부지의 지적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계약당시부터 지적도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또한 사유지라 할지라도 농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식부지로 용도변경 후에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통상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 상황에 따라 용도 변경하는 데만 2~3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국유지일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특히 바다 가두리 양식을 할 경우는 공유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바다사용에 대한 권한은 해군이 가지고 있다. 사용허가를 받으면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하다.

천해인 경우는 지역 어업협동조합과 임대 조건에 대해서 협상해야 한다. 영세어민의 경우는 허가받는 지역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양식회사와 조건만 맞으면 좋은 협력관계 속에서 양식할 수 있다. 한 가리비 양식회사의 경우는 천해(6~14m)와 심해(30m 이상) 두 곳에 양식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천해지역은 지역 영세어민과 같이 하고, 심해지역은 따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국유지든 사유지든 양식회사 직원은 지역주민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인터뷰한 기업들에 따르면, 이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숙소제공 등의 비용 절감차원에서 회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윈윈전략이라고 한다. 실제로 인터뷰한 기업의 고위간부들은 회사 설립당시부터 혹은 9년 이상 그 회사에 몸담고 있었으며, 지역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 4.1.2 생산시설 허가

생산시설에 대한 허가는 양식장 혹은 관련 시설이 위생과 주변 환경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사한다. 연간 3.5톤 이상을 생산하는 모든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150톤 이상을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시설의 경우는 좀 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한다. 면담한 페루 양식기업의 관계자 대부분이 기업 설립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변하였다. 대규모 시설의 경우는 승인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페루생산부에 등록되어 있는 용역회사들만 실시할 수 있다. 이들 회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페루생산부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페루생산부가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법적으로 양식시설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승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면담한 양식기업들은 주민과의 관계를

위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기업 설립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 채용, 어획물의 좋은 가격 매입(예, 가리비 양식기업의 경우, 자연채포 가리비를 판매하는 주민들에게 수출가격으로 매입) 등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심해 해면양식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이외에도 해군에서 실시하는 수리학적 조사를 통하여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페루 어종이 아닌 외래종의 경우는 수정란의 수입을 포함한 양식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수입된 수정란이 양식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문제가 없다. 송어의 경우는 대부분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정란을 수입하여 양식을 하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한 지역에서 승인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추가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 4.1.3 위생검사

양식회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하며 이는 SANIPES 권한이다. 특히 폐수처리는 가장 신경을 많은 써야 하는 부분이다. 1차 물리적 처리, 2차 화학적 처리, 3차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정화된 폐수는 농작물에도 보급할 수 있다. 페루의 수산양식 관련 기업들은 1차와 2차 처리 후 1km 이상의 바다로 폐수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 시설을 증축하거나 넓힐 경우에도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큰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나중의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 4.1.4 판매 허가

양식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을 국내와 국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양식장을 가동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규모의 양식 기업의 경우는 국내용이 아니라 해외수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출을 위한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4개월 정도가 걸린다.

요약하면, 양식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사유지나 국유지나, 어떤 규모나 등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사유지를 매입하고 내수면 양식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양식장을 가동할 수 있다. 강, 호수, 바다와 같은 국유지일 경우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자본이 충분한 경우에 승인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미 승인된 양식기업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쉽다고 할 수 있다.

#### 4.1.5 기존 양식기업 설립 사례

2009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페루에 넙치 양식기업을 설립한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는 과거 수정란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전지식 없이 양식장 건립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양식시설을 모두 설치한 상태에서 한국산 넙치수정란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결국 2013년에 페루산 넙치로 양식을 시작하였다. 약 8개월 동안 넙치를 양식하였으나 성장속도가 너무 느려 실패하고 2014년 말에 현지인이 부지와 시설을 매입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동 부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양식부지로 변경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현재는 과거보다 절차가 빨라졌으나 당시 농지변경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의 경우 2009년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양식을 시작하기까지 4~5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당초 기업이 희망한 한국산 넙치양식을 할 수 없었다. 현재는 모든 허가가 났으며 향후 20년간 양식을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설립과정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 양식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설이 낡아져서 전기시스템이나 튜브 등의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가리비 양식회사(연간 700톤 이상 생산,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의 경우는 기존의 양식경험이 전무하였지만 양식의 잠재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가족 전체가 투자하여 크게 성공한 경우다. 2008년도에 350헥타르에 대한 모든 승인절차를 마치고 가리비를 생산하여 현재 페루에서 2위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의 경우는 바다 공유지 사용 허가에서 수출판매 허가까지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약 50개월이 걸리는 등 사업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심해와 천해 부지를 처음부터 계획하는 등 여러 가지 양식변수를 고려한 것이 사업의 주요 성공요인이 되었다.

## 4.2 양식회사 운영 관련

모든 승인절차가 마무리되고 양식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① 육종, ② 치어 성장, ③ 판매할 정도까지로 성장, ④ 판매를 위한 가공, ⑤ 판매를 위한 냉장 및 포장 단계를 거치게 된다.

대부분의 페루 양식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육종이다. 송어의 경우는 육종이 어려워서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며, 파이타 등 다른 양식의 경우에도 자연에서 산란해서 부화한 자치어를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라비의 경우는 육종을 하고 있으나 더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돔 종류인 치타의 경우는 아직 실험단계이다. 모든 양식단계가 육종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페루 양식기업은 육종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한 기업에서 담당한다. 또한 아직까진 페루에서는 자연에서 부화한 치어를 양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정란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이러한 요인이 육종산업 발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치어 성장은 사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페루는 엔초비 어분이 세계 1~2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비해 사료값이 비싼 편이다. 또한 각 양식어종에 대한 사료 적정비율에 대한 노하우가 주요 양식어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편이다.

양식장 운영에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오염도 추가 변수다. 특히 민물양식의 경우는 주변의 광산에서 흘러오는 폐수나 주변 영세양식장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과 유출된 양식어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큰 규모의 양식장의 경우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각종 중금속 및 오염수치를 측정하여 오염관리에 대비를 하고 있다.

양식부지 매입 및 시설단계부터 양식수와 전기시설 등도 고려대상이다. 해면양식의 경우는 엘니뇨와 같은 큰 기후변화나 적조 발생을 감안하여 부지를 선정해야 하며, 민물양식의 경우는 긴 건기 때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야 한다. 톱베스의 한 킬라피아 양식회사의 경우는 근처의 큰 저수지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저수지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퇴적물이 축적되어 저수용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여름에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 이에 관련한 사전조사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양식수의 온도와 산소포화도, 염분을 맞춰주는 것도 주요 요소이다. 가리비 양식의 경우는 가리비의 특성상 바다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가리비의 경우는 바닷물의 온도가 26도 이상 7일 지속되면 폐사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한 가리비 양식회사의 경우는 매일 바닷물 온도, 산소포화도, 염분 등을 측정하여 위험수치가 보이면 양식그물을 최대 32m까지 심해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다른 한 양식회사의 경우는 매일 수온과 기온, 산소포화도, 바람 등을 모니터링하여, 수온이 너무 높기 전에 바로 수확해서 전량 판매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또한 2월 한 달은 수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양식을 중단하고 시설점검과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한다.

양식 위험 변수 중 하나는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에 의한 양식종의 폐사다. 페루는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2018년에 에콰도르 강을 따라 흘러들어 온 바이러스가 틸라피아를 감염시켜 한 양식회사의 경우는 폐사율이 50%나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는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치어만 선별하여 양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양식어종을 어느 정도까지 성장시켜서 판매하느냐 하는 것은 페루 국내판매나 수출 판매냐에 따라 달라진다. 페루는 어종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400g~500g 정도의 생선을 선호한다(넙치의 경우는 1kg). 이에 반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1~2kg까지 성장시킨다.

그동안 바닷물을 이용한 양식은 대부분 가리비에 한정되어 왔으나 넙치나 치타와 같은 해면양식 뿐 만 아니라 육상양식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치타의 경우는 양식기술이 아직 실험단계이나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페루의 국내 수요를 고려해 보았을 때, 빠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업종의 회사를 같이 운영하기도 한다. 한 회사의 경우는 가리비 양식이외에 가공공장을 운영하여 가리비, 엔초비, 대왕오징어 등의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데, 가공공장의 직원만 1,000여명에 달한다. 다른 회사의 경우는 새우양식이외에 망고와 같은 농장을 같이 운영하여 양식 위험지수를 최소화하고 있다.

인터뷰한 양식회사들은 보다 나은 양식을 위해서는 양식수의 온도, 산소포화도 등의 모니터링과 산소공급의 자동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한 틸라피

아 양식회사의 경우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데, 각 수조 당 하루에 9번 모니터링을 하는 셈이다.

인터뷰한 양식회사들이 페루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기업 설립에서의 환경영향 평가 절차의 간소화, 생산품의 수출절차 간소화, 그리고 세제혜택을 꼽았다. 환경영향 평가 담당부서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며, 수출절차가 통상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냉동저장창고의 비용 혹은 전기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다 간소화하고 빠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밖에 농업부분에서는 장비를 들여올 때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양식은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미흡한 편이라고 하였다.



## 제5장 결론

페루는 중남미지역에서도 양식산업의 발달이 늦은 편이다. 그런 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하는 페루 양식기업들은 대규모의 양식장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페루에서 양식기업을 설립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페루 양식기업을 설립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엔초비 세계최대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어리, 보니또, 대왕오징어 등 인간 직접소비를 위한 수산자원량은 매우 한정적이며 그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페루정부 입장에서는 페루 국민들의 식량안보와도 맞물려서 양식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페루정부에서는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더불어 국가수산양식혁신프로그램(PNIPA<sup>24</sup>)을 실시하고 양식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실행과 기존의 성공한 기업에 자극을 받아 많은 민간기업들도 양식산업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많은 어업·양식회사가 PNIPA에 참여하고 있으며, 페루 해양연구소(IMARPE)와 같은 연구기관과 같이 협력하여 치타 등과 같은 어류의 양식 기술 개발과 상업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뷰한 회사들 또한 모두 PINPA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넙치 등 여러 어종에 대해 높은 양식기술을 가지고 있다. 페루 정부, 지자체나 관련 연구기관들 뿐 아니라 페루 민간기업도 한국의 높은 기술수준을 이전받고 싶어 한다. 한편으로 국내는 양식산업 성장의 한계와 연어나 방어와 같은 소비자 입맛의 변화에 따른 국내 판매량의 지속적 감소를 고려해 본다면, 해외로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라고 판단된다. 인터뷰한 회사들 모두 페루 양식산업의 전망을 밝게 보고 양식부지의 확대나 다른 어종의 양식으로의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4) 세계은행(World Bank)과 페루정부의 자금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촉진과 기술을 민간인에게 적용 및 확장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동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수행되며, 세계은행으로부터 2억불을 지원받는다. 많은 민간양식기업이 동 프로그램에 신청하였으며, 2018년에 265개의 프로젝트에 3천3백4십만달러가 출자되었다.

지금까지 페루에서 민간 양식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절차나 변수들을 기술해 보았다. 페루 양식기업 설립 절차가 한국과 많이 다르고 또한 부지 매입에서부터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독자적으로 페루에 진출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기술이 우월한 양식어종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페루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현지사정에 밝은 양식 관련 법 전문가의 자문이 꼭 필요하며 수산학 전문가의 현지 해양수산 상태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제6장 용어 해설

### 6.1 약어 해설

- ANA: 국립수자원청(National Water Authority).
- EIA-sd: 부분적 상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Semi-detailed Environmental Impact Study).
- DIA: 환경영향평가 진술서(Environmental Impact Declaration).
- DICAPI: 항만·연안경비총국(General Directorate for Harbour and Coast Guards).
- GLA: 양식업 일반법(General Aquaculture Law).
- GAR: 양식업 일반규정(General Aquaculture Regulation).
- MD: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 MP: 생산부(Ministry of Production)
- UIT(Peruvian Tax Unit, 스페인어로 Unidad Impositiva Tributaria): 페루의 조세 단위로서 매년 세무 당국이 지정하는 기준 세율. 2018년도 기준 S/.4,150.00 페루 솔
- SANIPES: 국립수산물보건청(National Sanitary Fishing Organization)
- SERNANP: 국립보호구역관리청(National Protection Service of Natural Areas)
- VFA: 수산·양식청(Vice Ministry of Production and Aquaculture)
- VUA: 양식업 단일정보창구(Single Window for Aquaculture)

### 6.2 용어 사전

- 양식업<sup>25)</sup>: 수중 생물을 양식하는 것으로서 사육 과정에서 개입을 위한 기술을 활용하고, 자연적인 생산량 이상으로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며,

25) 양식업 일반법 제7조에 정의된 바에 의함

식품 공급원과 일자리 및 소득원의 역할은 물론 환경 보존, 생물다양성 보존, 천연자원 및 지역 활용 최적화와 조화를 도모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최적화하고, 수확된 결과물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활동이다.

- 양식업 허가(aquaculture authorization): 사유지에서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 강둑과 같은 내륙수 지역 및 호수에 인접한 내륙 지역을 포함한다.
- 양식업권(aquaculture concession): 공공 부지에서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 강둑, 호수와 인접한 내륙 지역 또는 해양 양식(mariculture)을 포함한다.
- 양식 사료: 사육 중인 수생 생물의 소비를 목적으로 생산 또는 제조되는 식용 물질 또는 유기체로서 수생 생물에게 에너지 그리고/또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 양식업 허가 및 권리(aquaculture rights): 생산부에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양식업 영위를 허용할 목적으로 부여하는 허가 또는 양식업권
- 양식업 종묘: 양식 대상이 되는 개별 수생 생물 표본. 부화장 또는 실험실에서 생산되거나 자연에서 채집되어 양식업 생산 시스템에 활용되는 유충, 유생, 어리거나 작은 물고기 또는 어린 식물을 가리킨다.
- 허가(authorization): 생산부에서 부여하는 양식업 허가 및 권리의 일종
- 양식업권(concession): 생산부에서 부여하는 양식업 허가 및 권리의 일종
- 배지 조정(conditioning of the medium): 생산량 증대를 위해 자연 또는 인공 환경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일
- 폐수: 양식업 활동에서 발생하여 수역으로 배출되는, 일체의 정기적이고 일정한 액체의 흐름
- 항만·연안경비총국(General Directorate for Harbour and Coast Guards, DICAPI):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해양, 하천 및 호수를 관할한다. 공공 해안, 강둑 및 호수에 인접한 내륙 지역과 같은 공공 수역에 대한 이용 허가증 승인을 담당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진술서(Environmental Impact Declaration, DIA): 양식업 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완화 또는 방지할 수 있는 환경적 메커니즘 및 방안을 총망라하는 문서. 다양한 안전 위험에 대한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다. EIA-sd 보다는 덜 상세하며 AMYPE 프로젝트의 허가 및 양식업권 신청에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instrument): 영위하고자 하는 활동에 따라 이행하게 될 환경적 메커니즘 및 방안을 총망라하는 보고서. 환경영향평가 서류들로는 EIA-sd와 DIA가 있다.
- 양식업 일반법(General Aquaculture Law, GLA): 입법명령 제1195호에 의거 승인된 법. 양식업 분야 주요 법으로서 양식업 생산 규모, 대상지 분류 및 영위하고자 하는 양식업 활동의 유형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여되는 허가를 규율한다.
- 양식업 일반규정(General Aquaculture Regulation, GAR): 최고명령 제003-2016-PRODUCE에 의거 승인됨
- 법인(legal entity): 페루 법에 의거한 법인. 양식업 허가 및 양식업권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양 양식업(mariculture): 바다에서 행해지는 양식업
- 생산부(Ministry of Production): 페루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페루의 수산업, 양식업 및 산업 개발을 관할한다. 산하에 어업 및 양식업청(Vice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및 산업청(Vice Ministry of Industries)을 거느리고 있다.
- 국립 양식업 토지 등록부(National Aquaculture Land Registry): 생산부에서 개발한 체계로서 양식업 허가 및 권리와 연관된 각 토지 구역 및 개발 가능한 구역에 대한 중요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 국립보호구역관리청(National Protection Service of Natural Areas, SERNANP):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 보호받는 내륙 습지, 바다, 강 그리고 호수 지역의 관리·감독 소관 부처이며 이러한 보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양식업 프로젝트들은 이 기관의 견해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 국립수산보건청(National Sanitary Fishing Organization, SANIPES): 생산부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 위생 규제 및 절차를 관할한다. 그 예시로 수출입 되는 양식업 품목들에 대한 위생 관리 승인 및 사업체 구성 및 운영 방식이 있다.
- 국립수자원청(National Water Authority, ANA): 농업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소속으로 모든 수역을 관할하며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 수자원 이용 허가 및 바다, 강 또는 호수로의 폐수 방류에 관한

승인 업무를 담당한다.

- 1차 공정(primary process): 생산 과정에서 획득한 수생물을 가공하는 과정. 전적으로 신선 또는 냉장 상품을 획득할 목적으로 일정한 온도, 위생 및 기타 조건에서 실시되는 홍합의 껍데기 제거, 머리 및 내장 제거, 뼈 발라내기 및 기타 이물질 제거 과정으로 구성되는 전처리 과정이다. 이 과정은 보존 및 상품화 목적으로 냉동, 포장, 선별 과정 이전에 이루어진다.
- 개인(person): 내국인 또는 외국인 개인으로 법의 범위내에서 행동하며 양식업 허가 및 양식업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지방 정부(regional government): 페루 내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 조직이며 행정부에 속해있다.
- 부분적 상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Semi-detailed Environmental Impact Study, EIA-sd): 양식업 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완화 또는 방지할 목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환경적 메커니즘 및 방안을 총망라하는 보고서. 다양한 안전 위험에 대한 비상 계획도 포함된다. DIA보다 더 상세하며 AMYGE 프로젝트의 허가 및 양식업권 신청이나 외래종 도입에 대한 서류 절차에 필요하다.
- SINACUI/양식업 국가 시스템(Aquaculture National System): 일련의 다수 정부 부처 및 기관으로서 각자의 관할권에 따라 양식업과 관련한 관리·감독 및 허가 부여를 담당한다.
- 종묘 공급: 양식을 위한 종묘 공급. 부화장이나 자연 환경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 임시 점유권(Temporary Right): 양식업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배타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임시적 권리. 임시 점유권이 승인되면 정해진 기간에 걸쳐 해당 지역에서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한 프로젝트 개시 시도를 일체 보류하여 양식업 허가 및 권리 취득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양식업 허가 및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프로젝트 개시 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하고 일체의 필요한 정보 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산·양식청(Vice Ministry of Production and Aquaculture, VFA): 생산부 산하 부처로서 어업 및 양식업 활동 관리를 직접적으로 관할한다.
- 오수/폐수: 인위적 활동으로 인해 그 성질이 바뀌어 자연 수역으로 배출되어야

하나 수질 특성 문제로 인하여 배출에 앞서 처리가 필요한 물

본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법조문 국문본은 비공식 스페인어 번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 제7장 참고문헌

- Henry Quiroz López(2018) Pesca y acuicultura, presente y futuro, presentación en Conipesca 2018(Piura, 2018.6.)(제8회 국제수산업학회(2018.6.27. 피우라) 발표자료)
- Miguel Saldarriaga and Fernando Regalado(2018), Potencial acuicola en Perú, Moneda 172, 34~39p.(페루 양식 잠재력, Moneda 172호)
- Palgey Maim(2017) Aquaculture survey in Peru and feasibility study, 64p(페루 양식 연구 및 타당성 조사)
- The Ministry of Production(2010) Plan nacional de desarrollo acuicola(2010~2021), 35p.(페루 생산부, 국가 양식 개발 계획)
- The Ministry of Production(2018) PERÚ: Cosecha de recursos hibriobiológicos procedentes de la actividad de acuicultura por ámbito según y especie, 2006~2017(TM)(페루 생산부, 2016~2017년도 종과 영역(해면양식/내수면양식)에 따른 양식 수확량)
- The Ministry of Production(2018) PERÚ: Cosecha de recursos hidrobiológicos de la actividad de acuicultura según departamento y especie, 2006~2017(TM)(페루 생산부, 2006~2017년도 지역별 /종별 양식 수확량)
- The Ministry of Production(2018) PERÚ: Exportación de los productos hidrobiológicos procedentes de la actividad de acuicultura por especie según país de destino, 2006~2017 (VALOR US\$)(페루 생산부, 양식종별 수출국가별 수출금액(미화달러))
- The Ministry of Production(2018) PERÚ: Exportación de productos hidrobiológicos procedentes de la actividad de acuicultura por especie y según país de destino, 2006~2017(TMB) (페루 생산부, 양식종별 수출국가별 수출량(톤))
- The Ministry of Production(2018) PERÚ: Venta interna de recursos hidrobiológicos procedentes de la actividad de acuicultura según ámbito y especie, 2006~2017(TM)(페루 생산부, 종별 지역별 양식 페루 국내판매량)
- The Ministry of Production, Despacho Viceministerial de Pesqueria(2013) Areas Habilitadas por DICAPI para desarrollar actividades de acuicultura(페루생산부 수산청, 양식활동발전을 위해 항만·연안경비총국을 통한 투자지역, 2013년 자료)
- The Minsitry of Production and Estratex(2015) Estudio de mercado del lenguado en Lima metro-

politana y la provincia constitucional del Callo, 116p.(수도 리마와 까야오지역 넓치  
시장 연구)

웹사이트

<https://drive.google.com/file/d/1e1u1mG-rAD1LEQb4VcXw15h52kPinraF/view>

<http://catastroacuicola.produce.gob.pe/web/>

<http://rnia.produce.gob.pe/>

<http://www.produce.gob.pe/index.php/texto-unico-de-procedimientos-administrativos-tupa>

<http://spij.minjus.gob.pe/Graficos/Peru/2016/Octubre/30/RM-423-2016-PRODUCE.pdf>

<http://www.sanipes.gob.pe/web/index.php/es/tus-formularios>

[http://www.sanipes.gob.pe/tupa/tupa\\_\\_36.php](http://www.sanipes.gob.pe/tupa/tupa__36.php)

[http://108.59.10.36/procedimientos/9\\_I01-SDCPA-SANIPES-EVALUACION PARA HABILITACION SANITARIA DE INFRAESTRUCTURAS PESQUERAS Y ACUICOLAS Srev02.pdf](http://108.59.10.36/procedimientos/9_I01-SDCPA-SANIPES-EVALUACION PARA HABILITACION SANITARIA DE INFRAESTRUCTURAS PESQUERAS Y ACUICOLAS Srev02.pdf)

[http://www.sanipes.gob.pe/tupa/tupa\\_\\_13.php](http://www.sanipes.gob.pe/tupa/tupa__13.php)

[http://www.sanipes.gob.pe/tupa/tupa\\_\\_7.php](http://www.sanipes.gob.pe/tupa/tupa__7.php)

# 부속서 1 - 환경 영향평가 승인 절차 - 생산부 TUPA

〈표 Annex 1〉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산부 - 생산부 결의안 번호 010-2018-PRODUCE에 의해 승인됨  
TUPA

절차명	요구사항		행정 수수료		자격조건		승인 소요시간 (업무일 기준)	절차시작	관할 분야	해당관청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 UIT로 표시)	(S/로 표시)	자동	사전 평가				재심	항소	
환경적 어업 및 양식업 총국 - DGAAMPA												
26	어업 및 양식업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환경 기기 인증  • 법률 번호 28611, 제17, 25,51, 132조 • 법률 번호 27448, 제3조, 제10, 10.1, 10.2, 11조, 11.1, 11.3, 12조, 12.1, 12.2 • S.D. 번호 019-2009-MINAM, 제47조, 53조, 부속서 • S.D. 번호 038-2001-AG, 제116조 • E.O. 번호 25977, 제1, 29, 120조 • S.D. 번호 012-2001-PE, 제2, 76, 77, 89, 90, 95,	1. 양식 번호 DGAAMPA-001을 통해 GDAAMPA로 제출된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띠  2. 출력된 EIA 사본 1부 및 디지털(CD) EIA 사본 1부,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대리인, 환경 자문사의 대리인(생산부의 EIA를 위해 승인받은 회사 명부에 유효하게 기록되어 있는 자문사), 및 EIA 작성자가 서명  3. 기술 검사 수역(해양, 호수, 석호	양식 번호 DGAAMPA-001	무 료			X	90(구십)일	서류 관리 및 보관 사무국	DGAAMPA	DGAAMPA	VFA
										제출 기한: 15 업무일	제출 기한: 15 업무일	
										처리 기한: 30 업무일	처리 기한: 30 업무일	

절차명	요 구 사 항		행정 수수료		자격조건		승인 소요시간 (업무일 기준)	절차시작	관할 분야	해 당 관 청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 UIT로 표시)	(S/로 표시)	자동	사전 평가				재 심	항 소	
	120조 • E.O. 번호 1195, 제1, 20, 25조, 25.4 • S.D. 번호 003-2016-PRODUCE, 제11, 24, 26, 29, 36, 38조 • S.D. 번호 019-2009-PRODUCE, 제1조 • S.D. 번호 007-2016-PRODUCE, 제2조 • S.D. 번호 015-2016-PRODUCE, 제1, 2, 3, 4조	등등)에서의 양식활동 관련: 4. 임시 권리증의 간단한 사본										
59	양식업 활동을 위한 환경영향 신고서(DIA) 인증 또는 업데이트 • 법률 번호 27444, 제 106조, 113조 • S.D. 번호 019-2009-MINAM, 제22y 30조 • S.D. 번호 019-2009-MINAM, 제22, 30조 • 법률 번호 27444, 제44 조	1. 양식 번호 DGAAMPA-025를 통해 DGAAMPA로 제출된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펴 2. 등록된 환경 자문관이 작성한 DIA나 DIA 업데이트 출력 사본 및 디지털 사본 2부 3. 기술 검사	양 식 DGAAMPA - 025	무 료			X	30(삼십) 업무일	서류 관리 및 보관 사무국	DGAAMPA	DGAAMPA  제출 기한: 15 업무일  처리 기한: 30 업무일	VFA  제출 기한: 15 업무일  처리 기한: 30 업무일
(*1) 리마 수도권 지역에 대한 해당 절차는 일시적으로 생산부의 관할권 아래 있으며 이는 절차가 본 주체의 TUPA로 포함될 때까지 이다.												

## 부속서 2 - 양식권과 관련한 절차 - 생산부 TUPA

〈표 Annex 2〉 AMYGE 권리 승인 및 갱신

생산부 - 생산부 결의안 번호 010-2018-PRODUCE에 의해 승인됨  
TUPA

절차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행정 수수료		자격조건		승인 소요시간 (업무일 기준)	절차시작	관할 분야	해당관청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 UIT로 표시)	(S/로 표시)	자동	사전 평가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양식업 총국 - DGA													
36	AMYGE의 권리 승인 • 법률 번호 27444, 제115 및 122조 • E.O. 번호 1195, 제30조 30.5 및 제33조, 33.2 • S.D. 번호 003-2016-PRODUCE, 제33, 41조 • S.D. 번호 019-2009-MINAM, 제22조	1. 양식 번호 DGA - 001를 통해 DGA로 제출된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띤 (양식에 EIA 승인번호 및 임시 권리증 번호를 표시) 2. 유효한 모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서명한 보존 및 투자, 양식업 생산 협약 프로젝트 제출	양 식 DGA-001	무 료	무 료			X	30(삼십) 업무일	서류 관리 및 보관 사무국 - VUSP	DGA	DGA 제출 기한: 15 업무일 처리 기한: 30 업무일	VFA 제출 기한: 15 업무일 처리 기한: 30 업무일
37	AMYGE의 권리 갱신 및 수정 • 법률 번호 27444, 제51,115, 122조 • E.O. 번호 1195, 제33조,	1. 양식 번호 DGA - 022를 통해 DGA로 제출된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띤 (양식에 EIA 승인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이는 권리의 유효성 내에서 제시되	양 식 DGA-002	무 료	무 료			X	30(삼십) 업무일	서류 관리 및 보관 사무국 - VUSP	DGA	DGA 제출 기한: 15 업무일 처리 기한: 30	VFA 제출 기한: 15 업무일 처리 기한: 30

절차번호	절차명	요구사항		행정수수료		자격조건			승인 소요시간 (업무일 기준)	절차시작	관할 분야	해당관청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 UIT로 표시)	(S/로 표시)	자동	사전 평가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33.2, 33.3 • S.D. 번호 003-2016-PRODUCE, 제41조 • S.D. 번호 019-2009-MINAM 제22, 30조	어야 함) 2. 유효한 모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서명한 보존 및 투자, 양식업 생산 협약 프로젝트 제출 갱신의 경우: 3. 기술 검사										업무일	업무일
43	AMYGE를 위한 허가 승인 • 법률 번호 27444, 제115, 122조 • E.O. 번호 1195, 제30조, 30.5, 제34조, 34.2 • S.D. 번호 003-2016-PRODUCE 제33조 • S.D. 번호 019-2009-MINAM, 제22조	1. 양식 번호 DGA-003을 통해 DGA로 제출된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띠(양식에 EIA 승인번호 표시)	양식 DGA-003	무료	무료			X	30(삼십) 업무일	서류 관리 및 보관 사무국 - VUSP	DGA	DGA 제출 기한: 15 업무일 처리 기한: 30 업무일	VFA 제출 기한: 15 업무일 처리 기한: 30 업무일
44	AMYGE를 위한 허가 갱신 및 수정 • 법률 번호 27444, 제51, 115, 122조 • E.O. 번호 1195, 제34조, 34.2 • S.D. 번호 003-2016-	1. 양식 번호 DGA - 004를 통해 DGA로 제출된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띠(양식에 EIA 승인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이는 권리의 유효성 내에서 제시되어야 함)	양식 DGA-004	무료	무료			X	30(삼십) 업무일	서류 관리 및 보관 사무국 - VUSP	DGA	DGA 제출 기한: 15 업무일 처리 기한: 30 업무일	VFA 제출 기한: 15 업무일 처리 기한: 30 업무일

절차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행정 수수료		자격조건			승인 소요시간 (업무일 기준)	절차시작	관할 분야	해당관청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 UIT로 표시)	(S/로 표시)	자동	사전 평가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PRODUCE, 제33조 • S.D. 번호 019-2009-MINAM, 제22, 30조												
49	AMYGE 허가나 권리의 양도 • 법률 번호 27444, 제51, 115, 122조 • E.O. 번호 1195, • E.O. 번호 1195, 제33조, 33.1 및 33.2, 제34조, 34.2 • S.D. 번호 003-2016-PRODUCE, 제10, 33, 41, 47조	1. 양식 번호 DGA - 004를 통해 DGA로 제출된 요청, 진술서의 성격을 띤 권리 양도의 경우: 2. 유효한 모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서명한 보존 및 투자, 양식업 생산 협약 프로젝트 제출 3. 기술 검사	양식 DGA-005	무 료	무 료		X		14(십사) 업무일	서류 관리 및 보관 사무국 - VUSP	DGA	DGA  제출 기한: 15 업무일  처리 기한: 30 업무일	VFA  제출 기한: 15 업무일  처리 기한: 30 업무일

### 부속서 3 - 양식업권 관련 절차 - DICAPI TUPAM

〈표 Annex 3〉 수역 사용 허가 절차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 수 료	승인 종류	승인 소요시간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116	생산부의 요청에 의한 동물 혹은 수생식물 종에 대한 조사, 종자 및 부화장 개발을 위한 수역 허가에 대한 이사회 결의의 승인  • 법률 번호 27460 • S.D. 번호 030-2001-PE	1. 수역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생산부 관할 분야에서 환경국장에게 보낸 서류  2.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파일 2부를 첨부 a. 개발해야 하는 활동의 종류 b. 생물학자, 어업공학자 혹은 지리학자가 서명한 원본 지도 1부, 이들의 전문 자격증을 첨부 (1) 일정 비율로 축소 제작된 지도로, 지리학적 지역 내에서 프로젝트를 가시화할 수 있게 하는 지도 (2) 일정 비율로 축소 제작된 지도로, 다음의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 지도: a. m <sup>2</sup> 단위로 나타낸 프로젝트에 소요될 지역의 면적, UTM 및 GPS 정점 좌표 b. 안내도 및 상세 지도는 해양 수로측량술 및 항해에 대한 지시(The Direction of Hydrography and Navigation of the Marine)에 따라 편집된 해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원본 지도)  3. 행정 수수료 비고: 해사 감독관이 해당 지역을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편 및 물류는 생산부가 제공한다.	분야: 항만 및 해안 경비 총국  편제부대: 환경 국장  부서: 강변 및 대륙붕  E-05	무 료	사전 평가 - 긍정적	이십(20) 업무일
117	동물 혹은 수생식물 종에 대한 조사, 종자 및 부화장 개발(양식, 해양양	1. 관할권이 있는 해사 감독관을 통해 DICAPI 환경 국장에게 제출된 요청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분야: 항만 및 해안 경비 총국	30.974 % UIT	사전 평가 - 긍정적	삼십(30) 업무일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 수 료	승인 종류	승인 소요시간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p>식 및 유사한 내용) 위한 수역 사용권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번호 26620</li> <li>• S.D. 번호 028-DE/MGP 제B-010105조(inciso a)</li> <li>• 입법 명령 번호 1032</li> <li>• SD 번호 020-2008-PRODUCE</li> </ul>	<p>a. 이름, 나이,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b. 신분증 번호 c. 납세자 번호 d. 신청자의 공동등록 정보</p> <p>2. 다음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 3부 및 CD 1장:</p> <p>a. 생물학자나 어업 공학자가 서명한 보고서로 활동의 종류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술적 보고서. 해당 생물학자나 어업 공학자의 전문 자격증을 첨부</p> <p>b. 수평적·수직적 컨트롤 지점에서의 등록된 각도, 거리, 방위각 및 수직·수평 폐쇄계산이 있는 방법론적 다이어그램을 첨부 혹은 1차, 2차 및 또는 3차 국가 측지 망(National Geodetic Network)에 언급된 지점의 WGS-84 Datum에 언급 된 위성 측지법(Satellite Geodesy method)에 의해 수행 된 경우 좌표 보고서 시트와 함께 방법론 다이어그램을 토목 엔지니어 또는 지리학 엔지니어(Geographical Engineer), 기술 대학 또는 수로 전문가의 승인 시트 첨부</p> <p>c. 해당지역 수심도 조사, 토목공학자나 지질공학자, 혹은 수로측량 전문가 1명이 서명하고(서명자의 전문 자격증 첨부) 측지계 WGS-84를 사용할 것</p> <p>d. 수평 혹은 수직 스테이션 혹은 지면점에 대한 설명. 방위 및 지역 사진 포함</p> <p>e. UTM 및 GPS 방위, 축척비율 1/5,000 ~ 1/50,000인 측지계 WGS-84로 작성된 입지계획</p> <p>f. 주변 수심도 원본 및 m<sup>2</sup>로 나타낸 사용되어야 하는 수역 면적, 측지계 WGS-84에 따라 UTM 및 GPS로 정점좌표를 표시할 것. 또한 상세한 시추 보고서도 제출</p>	<p>편제부대: 환경 국장</p> <p>부서: 강변 및 대륙봉</p> <p>E-06</p>	S/.1,300.908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 수 료	승인 종류	승인 소요시간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g. HIDRONAV-38 규제에 따른 매체 및 특성, 해상 신호. 적절한 경우 UTM 및 GPS 방위 포함 h. 생산부가 수여한 임시 권리증의 이사회 결의 1부 i. 생산부가 승인한 EIA 승인 1부  3. 행정 수수료  비고 • 지도 및 연구는 국립수로항해처 혹은 국립 지리학 연구소가 편집한 해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토목 공학자나 지리 공학자(전문 자격이력 첨부) 혹은 수로측량 전문가 1명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연간 수수료는 수역 사용권이 승인되는 즉시 Banco de la Nacion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납입 영수증을 해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AMYGE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자들은 요구사항을 VUA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부속서에 따라, 서류를 첨부한다.

(적절하게 표시 하시오.)

\_\_\_\_\_ 배상 \_\_\_\_\_  
 신청인 \_\_\_\_\_ 서명

\_\_\_\_\_ 지역 \_\_\_\_\_ 날짜

〈표 Annex 4〉 양식번호 79 부속서

양식 번호 79에 대한 부속서

절차 번호 01:		AMYGE의 권리에 대한 승인
1	양식에 따라 DGA로 제출한 요청서	
2	AMYGE 권리 승인을 위한 확인 양식 혹은 임시 권리증	
3	“양식업 EIA 작성을 위한 지침”에 따라 등록된 환경 자문사가 작성한 EIA로, 디지털 양식의 EIA	
4	양식에 따라, 보존 및 투자, 양식업 생산 협정 프로젝트	
5	생산부에 납부된 행정 수수료	
6	생산부에 납부된 기술 검사 수수료	
7	결의안 출판 수수료	
절차 번호 02:		AMYGE 허가에 대한 승인
1	양식에 따라 DGA로 제출한 요청서	
2	“양식업 EIA 작성을 위한 지침”에 따라 등록된 환경 자문사가 작성한 EIA로, 디지털 양식의 EIA	
3	해당 지역의 소유권 혹은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해당 서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공 기록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	
4	생산부에 납부된 행정 수수료	
5	생산부에 납부된 기술 검사 수수료	
절차 번호 03:		AMYGE 권리 혹은 허가의 양도
1	양식에 따라 DGA로 제출한 요청서	
2	승인을 받는 다는 조건하에, 판매 계약서나 양도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 본인의 죽음으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승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페루 민간양식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가이드라인

3	생산부에 납부된 행정 수수료
4	생산부에 납부된 기술 검사 수수료
절차 번호 04: 수역 사용권을 위한 이사회 결의 승인	
1	관할권을 가진 해사 감독관을 통해 DICAPI 환경 국장에게 제출된 요청서
2	AMYGE 권리를 위한 생산부로 부터의 이사회 결의 번호 포함
3	DICAPI에 납부된 행정 수수료
절차 번호 05: 수역 사용권의 양도	
1	관할권을 가진 해사 감독관을 통해 DICAPI 환경 국장에게 제출된 요청서
2	DICAPI에 납부된 행정 수수료
절차 번호 06: 육지수 혹은 지하수의 물 사용 목적을 위한 허가증 승인; 수력 기반산업 작업의 시행을 고려한 양식 프로젝트 관련	
1	ANA로 제출된 요청서
2	ANA에 납부된 행정 수수료
3	ANA에 납부된 기술 검사 수수료
4	AMYGE 권리를 위한 생산부로 부터의 총국 결의 번호 포함
절차 번호 07: 수자원 개발을 위한 수력 기반사업 작업 시행 허가 및 수자원 목적의 허가증 승인; 수력 기반사업 작업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은 양식 프로젝트 관련	
1	ANA로 제출된 요청서
2	ANA에 납부된 행정 수수료
3	ANA에 납부된 기술 검사 수수료
4	AMYGE 권리를 위한 생산부로 부터의 이사회 결의 번호 포함
절차 번호 08: 육지수 혹은 지하수의 물 사용 목적을 위한 허가증 승인; 수력 기반사업 작업의 시행을 고려한 양식 프로젝트 관련	
1	ANA로 제출된 요청서
2	수력 기반사업 작업의 실행에 대한 ANA의 허가 결의 번호 포함
3	ANA에 납부된 행정 수수료
4	ANA에 납부된 기술 검사 수수료
5	표면수역 관련: 수자원 개발을 위한 수생 연구 승인
6	지하수역 관련: 수자원 개발을 위한 수생 연구 승인
절차 번호 09: 물 사용 목적을 위한 허가증의 양도	
1	ANA로 제출된 요청서
2	ANA에 납부된 행정 수수료

## 부속서 5 - 양식업권과 관련한 절차 - ANA TUPA

〈표 Annex 5〉 수산양식 목적 수자원개발을 위한 수자원 기반사업 승인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 수 료	승인 종류	승인 소요시간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8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 개발을 위한 물 기반사업 집행 승인  법적 근거: • 법률 번호 27444, 제113조(04/11/2001) • 법률 번호 29338, 제7조; 15, 12; 104, 106(03/31/2009) • 입법 명령 번호 1246, 제5조 (11/10/2016) • S.D. 번호 001-2010-AG003-2016, 제212.1, 224조(03/24/2010) • S.D. 번호 006-2010-AG, 제38조 literal d (07/08/2010)	6. ANA로 요청  7. 적용되는 경우, 환경 인증서 사본  8.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 승인한 EIA 승인. 기술 파일이나 개요서에 첨부하여 제출. 혹은 적절한 경우 규제의 양식 11, 12, 13, 14, 또는 15에 따른 기술적 보고서 제출. 전문 자격이 있는 엔지니어가 서명해야 함  9. 양식에 따라, 검사 수수료 납입 서약서  10. 행정 수수료	양식 001   양식 002	4.71% UIT S/.197.82	사전 평가- 부정적	삼십(30) 업무일
13	수자원 개발을 위한 수소 연구 승인  • 법률 번호 29338, 제47조(03/31/2009) • 입법 명령 번호 1246, 제5조 (11/10/2016) • S.D. 번호 001-2010-AG, 제79조, 3,	5. ANA로 요청  6. 수자원 개발을 위한 수소 연구를 위한 수문학적 연구 혹은 기술적 보고, 규제의 양식 06, 07, 08, 09, 10에 따름  7. 검사 수수료 납입 서약	양식 001   양식 002	4.56% UIT S/. 191.52	사전 평가- 부정적	삼십(30) 업무일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 수 료	승인 종류	승인 소요시간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81(03/24/2010) • S.D. 번호 001-2010-AG, 제38조lit. d (08/07/2010) • S.D. 번호 023-2014-MINAGRI, 제1조 (12/27/2014) • S.D. 번호 022-2016-MINAGRI, 제1, 2 조(12/22/2016)	8. 행정 수수료				
16	수상양식 목적의 수역사용 허가증 법적 근거: • 법률 번호 27444, 제113조(04/11/2001) • 법률 번호 29338, 제15조, 7, 53 (03/31/2009) • 입법 명령 번호 1246, 제5조 (11/10/2016) • S.D. 번호 001-2010-AG, 제85, 86조 (03/24/2010) • S.D. 번호 006-2010-AG, 제38조 lit. c(07/08/2010) • S.D. 번호 023-2014-MINAGRI, 제1조 (12/27/2014)	5. ANA로 요청 6. 검사에 대한 비용 납입 서약 혹은 납입 7. 행정 수수료 8. 적용 가능한 경우, 규제 부속서 16 ó 17에 따른 지하수 사용 허가증을 위한 기술적 보고서	양식 001  양식 002	4.65% UIT S/.195.3	사전 평가- 부정적	십오(15) 업무일

## 부속서 6 - 위생 투자와 관련한 절차 - SANIPES TUPA

〈표 Annex 6〉 위생 훈련 관련 절차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 수 료	승인 종류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7	<p>양식업 혹은 수산물 가공 공장 위생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토콜 부여 및 갱신, PROTOCOLO TÉCNICO PARA HABILITACIÓN, 1차 혹은 소규모 수가공 공장, 정화센터 및 급식 공장</p> <p>법적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번호 30063, 제9조 lit. i).</li> <li>• S.D. 번호 012-2013-PRODUCE, 제16조, 제26조</li> <li>• S.D. 번호 040-2001-PE, 제61-67조, 제84, 92, 93, 112, 126, 130조</li> <li>• S.D. 번호 009-2014- PRODUCE, 제53조, lit. a).</li> <li>• 법률 번호 28858, 제1조</li> <li>• 법률 번호 28966, 제3조</li> <li>• S.D. 번호 034-2008-AG</li> <li>• 부속서 I TUPA를 승인하는 S.D.의 제1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식·수산투자·승인총국에 제출한 요청</li> <li>2. 지역 생산국(DIREPRO)이 승인한 인증서로서, 유효한 운영 허가증을 승인하는 결의를 인증하는 인증서 사본</li> <li>3. PDF 디지털 형식의 위험 분석 및 주요 지점 계획 (HACCP)</li> <li>4. PDF 디지털 형식의 우수 양식업 관행 매뉴얼(BPM)</li> <li>5. PDF 디지털 형식의 위생 및 위생시설 프로그램</li> <li>6. 행정 수수료(**)</li> </ol> <p>보존 공장 관련: 요구사항 1~6</p> <p>PDF 디지털 형식의 열 침투 연구 2차 가공 공장(정제 기름) 및 사료를 개발하는 기관 관련: 요구사항1, 요구사항 3~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지자체 운영 허가증의 인증된 사본</li> <li>8. 기술적 보고서(위생 코드에 따라, 설계 및 건설(***)</li> <li>9. 다음 원래 계획의 사본 2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건축가 혹은 엔지니어가 서명한 입지 계획</li> <li>b. 건축가 혹은 엔지니어가 서명한 지역 분배 계획</li> <li>c. 위생 엔지니어가 서명한 위생설비 계획</li> </ol> </li> <li>10. 계획 작성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투자(***) 2차 가공 공장 갱신 관련: 투자를 위한 모든 요구사항이 제출되어야 하고, 또한</li> </ol>	<p>양식 번호 2 (단일 양식)</p> <p>양식 번호 6 (공장 등록명부)</p>	<p>소규모 수가공 혹은 1차 가공 공장의 경우 S/. 1,436.60</p> <p>공업 가공 공장의 경우 S/. 2,860.10</p>	부정적인 사전 평가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 수 료	승인 종류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p>아래의 내용이 제출되어야 함.                      요구사항 8이 수정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서명된 진술서                      (*)서류는 시설이 위치한 지방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절차는 위생 감사의 대상이 됨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됨</p>			
13	<p>이패류 연체동물, 부화장, 생산 센터, 기타 중규모 및 대규모 기업의 위생 훈련을 위한 기술적 프로토콜 부여 및 갱신</p> <p>법적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번호 30063, 제9조 lit i)</li> <li>• 법률 번호 28858, 제1조</li> <li>• 법률 번호 28966, 제3조</li> <li>• S.D. 번호 012-2013-PRODUCE, 제16조, 제26조</li> <li>• S.D. 번호 007-2004-PRODUCE, 제69조, 제70조 3</li> <li>• S.D. 번호 040-2001-PE, 제28, 35, 130, 132 al 135, 137, 140조</li> <li>• S.D. 번호 009-2014- PRODUCE, 제53조 lit. a).</li> <li>• S.D. 번호 034-2008-AG.</li> <li>• 부속서 I TUPA를 승인하는 S.D.의 제1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식 · 수산투자승인총국에 제출한 요청</li> <li>2. 지역 생산국(DIREPRO)이 승인한 인증서로서, 유효한 운영 허가증을 승인하는 결의를 인증하는 인증서 사본</li> <li>3. PDF 디지털 형식의 위생 및 위생시설 프로그램</li> <li>4. PDF 디지털 형식의 우수 양식업 관행 매뉴얼(BPM)</li> <li>5. 부화장 프로그램</li> <li>6. 행정 수수료(**)</li> </ol> <p>최초의 위생시설 투자 혹은 기반사업 변경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요구사항 1-6, 그리고 기술적 보고서 (위생 코드에 따라, 설계 및 건설)</li> <li>8. 다음 원본 계획의 사본 2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건축가 혹은 엔지니어의 서명이 있는 입지 계획</li> <li>b. 건축가 혹은 엔지니어가 서명한 지역 분배 계획</li> <li>c. 위생 엔지니어 혹은 위생 전문가가 서명한 배수 계획</li> <li>d. 계획작성자의 위생투자</li> </ol> </li> </ol> <p>이패류 연체동물의 경우 계획 작성자가 제공하는 전문 투자 요구사항 1-6, 및 PDF 디지털 형식의 위험 분석 및 주요 지점 계획(HACCP)</p>	<p>양식 번호 2 (단일 양식)</p> <p>양식 번호 17 (생산 지역)</p>	<p>중규모 S/. 1338.20</p> <p>대규모(**) S/. 1,934.80</p> <p>(**)생산부가 승인한 결의안이 유효하면 절차를 따른다.</p>	부정적인 사전 평가

번호	절 차 명	요 구 사 항		수 수 료	승인 종류
		수량 및 명칭	양식/코드		
		위생 투자 갱신 관련 요구사항 1-6, 및 기술적 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진술서  (*):서류는 시설이 위치한 지방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음 (**):절차는 위생 감사의 대상이 된다 (***) 이패류 연체동물 생산 지역은 제외			
36	수출 목적의 수생 생물자원에 대한 공식 위생 인증 법적 근거  • 법률 번호 30063, 제9조 lit. h), 제10, 12조  • E.O. 번호 1036, 제4조,  • S.D. 번호 010-2010-MINCETUR, 제5조, 5.1  • S.D. 번호 012-2013-PRODUCE, 제3조, 3.2, 제21, 23조  • S.D. 번호 012-2013-PRODUCE, 제53조 it. b).  • S.D. 번호 034-2008-AG, 제25조, 1차 최종 보충 규정  • 부속서 I TUPA를 승인하는 S.D.의 제1조	1. 외부 상업을 위한 단일 창구 2. 원산지 인증 3. 상업 영수증 4. 수생 생물자원 포장 리스트 5. 수생 생물자원 원산국의 위생 담당기관이 승인한 위생 인증서 6. 수송 서류 7. 지역 사무국(DIREPRO)이 승인한 수입 인증서 8. 행정 수수료(*)	양식 번호 25	S/.394.60	부정적인 사전 평가